

ISSN 2093-5048

2010 연차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010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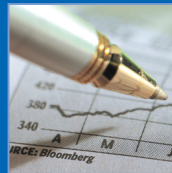
Annual Report 201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TEL 02-758-0114 |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2010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간사

Annual Report 2010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의 주춧돌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유럽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과 가계부채 확대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예금과 행복을 지키는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은닉재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 등으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내용과 공사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를 명시하는 내용, 부실 책임자에 대한 일괄금융조회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 파산배당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 중단 등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경우 소수지분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유연 근무 형태인 스마트워킹을 도입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저축은행 리스크 감시 및 정리업무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금융시장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고 책임재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가 예금보험제도와 공사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금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 승 우

contents

— 본문 차례

제1장

02 총 설

제2장

06 업무 및 비전

06 제1절 추진 업무

17 제2절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

제3장

30 기금 관리

30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2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4장

48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및 MOU 관리

48 제1절 리스크 상시감시 체제 구축

55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MOU 관리 등



제5장

60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경영관리

60 제1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61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제6장

62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의 관리

62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65 제2절 보유자산의 관리

제7장

68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68 제1절 부실책임추궁체계 개선

68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71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73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76 제5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제8장

78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78 제1절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80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제9장

84 2010년도 결산

84 제1절 결산 개요

84 제2절 결산 기준

89 제3절 결산 현황

부록

100 1. 조직 운영

106 2. 2010년도 주요 일지

107 3. 통 계

contents

_표/그림 차례

10	표II-1	2010년도 주요 회수내역	42	표III-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19	표II-2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43	표III-14	보험료 수입
20	표II-3	휴면예금보험금 수령 실적	43	표III-15	금융권별 보험료율
21	표II-4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실적	44	표III-16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22	표II-5	2010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45	표III-17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2010년도)
25	표II-6	사회공헌활동 주요 내역	45	표III-18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누계)
26	표II-7	2010년도 정보화 이행과제	46	표III-19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30	표III-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47	표III-20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0년도)
31	표III-2	특별기여금 수입	47	표III-21	예금보험기금의 회수(누계)
32	표III-3	예보채 발행 및 상환	47	표III-22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33	표III-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50	표IV-1	부문별 인디케이터 선정 현황
34	표III-5	상환기금 차입금	52	표IV-2	청계금융포럼 회원 구성
35	표III-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2010년도)	57	표IV-3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 수정 · 추가 내역
35	표III-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누계)	62	표VI-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37	표III-8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65	표VI-2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38	표III-9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66	표VI-3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2010년도)
39	표III-10	상환기금의 회수(2010년도)	66	표VI-4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누계)
39	표III-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67	표VI-5	케이알앤씨 보유자산(잔액)
41	표III-12	케이알앤씨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70	표VII-1	부실금융회사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 70 표Ⅶ-2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 71 표Ⅶ-3 부실금융회사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 72 표Ⅶ-4 부실채무기업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 72 표Ⅶ-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 73 표Ⅶ-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 74 표Ⅶ-7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반·특별재산조사 현황
- 74 표Ⅶ-8 금융거래정보조회 관련 조사 현황
- 79 표Ⅷ-1 2010년도 주요 조사연구 실적
- 83 표Ⅷ-2 2010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전파 실적
- 83 표Ⅷ-3 2010년 훈련과정 강사 파견 및 우리나라 모범사례 발표 실적
- 93 표Ⅸ-1 요약 대차대조표(예금보험기금회계 총괄)
- 94 표Ⅸ-2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회계 총괄)
- 95 표Ⅸ-3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총괄)
- 96 표Ⅸ-4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총괄)
- 97 표Ⅸ-5 요약 대차대조표(공사회계)
- 98 표Ⅸ-6 요약 손익계산서(공사회계)
- 23 그림Ⅱ-1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 27 그림Ⅱ-2 중장기 정보화계획 추진체계('08~'10)
- 69 그림Ⅶ-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제 1 장 총 설

- 2010년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둔화, 국내 건설 경기 침체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설비투자 증가, 수출호조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6.1% 성장하여 2002년(7.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2010년중 금융시장은 국내외 리스크 요인 부각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금리가 국고채수익률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추세를 이어갔으며 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기대 약화 등의 영향으로 연중 하락세를 보여 전년말 대비 103bp 하락한 3.38%(국고채 3년)로 마감하였다. 다만, 5~6월중에는 유로지역 재정불안과 북한관련 리스크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고, 12월 들어서는 자본유출입 규제 및 물가오름세 확대 우려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 단기시장금리는 상반기 중 하락세를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다. 코스피지수는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년말에 비해 368.2포인트(21.9%) 상승한 2,051.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 가능성 및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5월말 경 1,253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29.7원(2.6%) 하락한 1,134.8원을 기록하였다.
- 2010년의 부보금융권별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칼리온은행 서울지점이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으로 상호변경 하였고, ABN암로은행 서울지점이 RBS은행 서울지점으로 상호변경 하였다. 보험사는 금호생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KDB간서스밸류로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사명을 KDB생명으로 바꾸었고, IBK기업은행이 출자한 연금전문회사인 IBK연금보험이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였다. 금융투자회사를 보면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종금과 합병하여 메리츠종금증권이 되었고 노무라인터내셔널 증권 서울지점은 노무라금융투자, 제이피모간퓨처스는 JP모간증권 서울지점으로 각각 영업양도 후 인가를 폐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 12월말 영업이 정지된 (전북)전일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이 신규 설립되었고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또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예쓰저축은행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전체 부보금융회사수는 전년



○ Annual Report 2010



도에 비해 2개 증가한 322개(은행 54개, 금융투자사 118개, 보험사 44개, 종합금융사 1개, 상호저축은행 105개)가 되었다.

-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은 2010년 말 현재 1,16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8%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은행 738조원(전년말 대비 +16.7%), 금융투자사 22조원(+18.2%), 보험회사 323조원(+9.9%), 중금사 1조원(△40.4%), 상호저축은행 77조원(+5.0%)으로써 중금사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부보예금은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2009년 6월에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0.05%p, 0.15%p 인하한 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2010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납부받은 총 보험료는 전년 말 대비 846억원(6.8%) 감소한 1조 1,600억원을 기록하였다.

- 공사는 그간 외화예금('08. 11)과 퇴직연금적립금('09. 6)을 부보대상으로 신규 편입하는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2010년 중에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확대, 금융권역간 보호대상 상품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금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증권금융예수금을 보호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 또한 동 개정안에는 선의의 예금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금융상품의 예금보호여부와 보호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공사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협의 관리'를 명시하는 내용, 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실책임자에 관한 자료제공 대상기관 확대 및 일괄금융조회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9년 5월에 개정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유한 정보가 대폭 확대되었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남유럽 위기 대응반」을 구성하여 각 금융권역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요인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 또한 업권별 또는 부보금융회사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는 「전담 데스크제」운동을 통하여 부보금융회사에 관한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리스



크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상시감시보고서 및 금융분석정보 등을 생산하여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 학계, 언론, 부보금융회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조기해소에 기여하였다.

- 또한, 공사는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0년 중 24개(저축은행 2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등을 위하여 2010년 7월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기간을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 불편 최소화 및 부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4~10개월 소요되던 정리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하였고 5천만원 초과예금자에 대해 최초로 개산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배당금 지급기간을 기존 평균 3.1년에서 4~5개월로 대폭 단축하였다. 2003년 이후에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공사는 예보기금을 통하여 2010년 말까지 총 4.5조원(2010년 중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파산배당 등을 통해 총 1.0조원(2010년 중 0.4조원)을 회수하였다.

- 한편, 공사는 2002년 말 이전에 부실화 된 517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상환기금을 통하여 2010년 말까지 총 110.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자주식 매각 등을 통해 총 47.5조원(2010년 중 2.9조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출자지분 중 약 9%에 대한 블록세일을 통해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다. 더불어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MOU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0년 3사분기까지의 MOU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기관주의(3건), 개선(3건), 임원경고·주의(4건), 직원조치요구(7건) 등의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MOU 목표 산정 및 부여 방식의 합리적 개선, 단기성과주의 방식을 위한 경영진 성과급 지급방식 수정 등 MOU관리업무를 개선하였다.

-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파산재단의 조기종결과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457개 파산재단 중 361개 재단이 법원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다.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은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 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 부동산의 경우 10회의 합동공매를 실시하여 총 560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고, 비상장주식 매각시 파산재단 공동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2010년 중 5회)한 결과 (주)텔코지분 21%(매각가 418억원) 등 다수의 주식을 매각하였다. 공사는 2008년부터 기금, 파산재단, 케이알앤씨 보유자산을 포함하는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보유자산을 상시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부실관련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부실책임 추구를 통하여 지원된 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총 487개 부실금융회사 및 966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 1,417건,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 18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 공사는 2010년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특히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창립회원기구이자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10월 IADI 연차총회(일본 도쿄)에서는 공사 부사장이 3년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와 정보·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신규 체결하였고, 정부의 개발경험공유사업(KSP)과 연계하여 몽골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등 대외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 2010년 12월 공사는 전직원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업무성과와 직무가치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2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예금보험제도 개선, 저축은행 리스크 감시 및 정리업무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하였다.

- 한편,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0년도에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금융성 기금 7개 중 3위, 전체 기금 35개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제 2 장

업무 및 비전

● 제1절 추진업무

1. 주요 추진실적

- 공사는 2005년 3월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사의 기능을 리스크감시, 보험·정리, 회수·조사 및 관리·지원 등 4대 기능으로 구분함으로써 업무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금융·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2009년 9월 예금보험기구로서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뜻을 모아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다.

- 이후 2010년 11월 공사의 발전방향인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글로벌 TOP3 예금보험서비스 제공자, 국내 최고수준의 기금관리자, 공공기관 스마트경영 리더>라는 Sub-비전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그리고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된 5개년(2011년~2015년)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였다.

가. 리스크 감시

- 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보험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예금자보호법 18조에 '보험사고 위협의 관리' 기능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협의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지원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금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보호 및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 및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Annual Report 2010



● 또한, 2014년에 시행될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차등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차등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대상 금융권역, 평가 주기 및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고, 해외의 차등평가 모형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금융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기존 평가지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을 차등평가모형에 반영하였다.

● 전담데스크 운영을 통해 개별 부보금융회사 및 각 금융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상시감시하고 있으며,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KDIC 금융현장정보' 등 부보금융회사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분석보고서를 정책당국 및 학계, 언론, 공사 유관 인사, 부보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언자(Risk Ad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0년 중 발생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자 「남유럽 위기 대응반」을 신설하여 전 금융권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전문가 네트워크인 「청계금융포럼」을 손보·저축은행권역까지 신규 확대하였으며,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 개최 및 참가, 금융권 간담회,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 등 시장정보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4개 저축은행(2003년 이후 총 68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리스크감시모형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은행·금융투자업·손보업권 등에 대해 업무보고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등을 통하여 구축된 통합리스크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 '09. 9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공사 등 5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개정한 이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유하는 금융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대외보고서 및 외환보고서 10건이 추가 공유되어 공유실적이 전년도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금감원의 업무보고서도 전년도 818건에서 432건 증가한 1,250건의 보고서를 공유하였으며, 입수율도 전년도 96.3%에서 3.7%p 상승한 100.0%를 기록하였다.

● 상시감시 및 리스크평가모형을 통한 리스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낮거나 특정 부분의 리스크 관



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금융회사의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공동검사대상을 선정하여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참여하고, 해당 기관의 리스크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경영진에게 촉구하였다. 2010년에는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검사대상을 대폭 확대('09년 15개→'10년 24개)하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한 리스크 감시를 대폭 강화하였다. 2010년 7월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유관 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 및 상호이해 증진, 차별화된 공동검사 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2010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서울보증보험 등 총 6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를 관리하고 있다. 2010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09년도 4/4분기부터 2010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주의 3건, 개선 3건, 통보 1건, 임원경고 3건, 임원주의 1건, 직원조치요구 7건 등 총 18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한편, MOU 운영과정에서 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MOU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7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일부 개정하는 등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장상황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MOU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나. 보험·정리

- 공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해외모범사례, 외부기관(KDI) 연구용역 등을 참조하여 현행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부실징후 포착 시 조기에 정리준비에 착수하고, 영업정지 후 신속히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2010년에는 현행 정리절차 내에서 정리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 불편 최소화 및 부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였다. 한편, 전일저축은행(2009년 12월 영업정지)은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2개월) 중에 정리준비를 최대한 완료함으로써 기존 4~10개월 소요되던 정리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하여 예금자의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또한, 2009년 3월 설립된 예쓰저축은행은 전북·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2009년 4월, 2009년 11월 계약이전 받아 설립된 한시적 가교금융회사(Bridge-Bank)로 영업중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2010년 3월 설립된 예나래저축은행은 전일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2010년 4월 계약이전 받아 영업중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다. 회수·조사

- 공사는 1997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중에는 출자금융회사 지분매각, 배당금 수령 및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9조원 이상을 회수하였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자금융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대한생명 상장공모(IPO)시 구주매출을 통해 1,586억원, 2010년 4월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을 통해 소수지분 9%를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11,606억원을 회수하였고, 2010년 7월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2,525억원, 2010년 8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685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舊 현투증권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등을 장중매각, 공매 등을 통해 총 127억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케이알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생명, 대우인터내셔널, 새한미디어, 영흥철강 등을 연중 블록세일, 구주매출 등을 통해 총 5,44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I-1〉 2010년도 주요 회수내역(출자금용회사 지분매각 등)

우리금융	• 2010. 4월, 소수지분(9%) 블록세일로 11,606억원 회수
대한생명	• 2010. 3월, 공모상장시 구주매출(2.23%)을 통해 1,586억원 회수
서울보증보험	• 2010. 7월, FY2009 당기순이익의 75%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2,525억원 회수
신한금융지주	• 2010. 8월, 상환우선주 상환금 1,685억원 회수
제주은행	• 2010. 10~12월, 보통주 장종매각으로 28억원 회수
케이알앤씨 (舊 정리금융공사) 보유주식	• 2010. 5월, 삼성생명주식 공모상장시 구주매출을(230만주) 통해 1,626억원 회수
	• 2010. 7월 하이닉스 1,200만주 매각으로 3,023억원 회수
	• 대우인터내셔널, 새한미디어 등 상장 5개 종목, 비상장 16개 종목 매각으로 791억원 회수

● 한편, 공사는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하여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총 457개 파산재단 중 361개 재단이 종결되었고, 현재 까지 파산배당을 통하여 약 18.9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다.

●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한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원된 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총 487개의 부실금융회사 및 966개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한 부실 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라. 관리 · 지원

● 공사는 '10년 12월 29일 전직원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업무성과와 직무가치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11년 1월 1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특히, 팀장급(3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의 비중을 전체연봉의 30% 이상(정부 권고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성과 및 직무가치에 따른 연봉 차등액이 최대 총연봉의 34.2%에 이르도록 하여 최고-최저 등급간 성과연봉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기본연봉도 매년 누적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적으로 인상률이 최고·최저 등급간 2%의 차이가 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직원이 스스로 업무성과 목표와 달성도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 back) 절차를 도입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성과평가 시행지침」도 함께 시행하여 성과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등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공사는 금융공기업 최초로 대학생 인턴 제도(산학연계과정)를 도입하였다. 대학생 인턴제도는 대학생이 공사에서 6주~8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수료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부여받는 산학연계 과정으로서, 2010년 7월 20명, 2010년 12월 19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대학생인턴제도는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관련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공사로서는 홍보효과 증대, 우수인재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또한, 공사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2010년 신입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시 금융공기업 최초로 장애인퀴터제를 도입 · 시행하였다. 장애인퀴터제란 채용예정인원의 일부 비율을 장애인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써 2010년 8월 청년인턴 채용시 채용예정인원(30명)의 30% 내외에 대해 장애인퀴터제를 시행한 결과, 7명의 장애인을 2011년 1월 신입직원 채용시 채용예정인원(17명)의 10%내외에 대해 장애인퀴터제를 시행한 결과 3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였다.

2.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가. 차등보험료율제도

- 공사는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6년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7년 5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



건을 수렴하였다. 이후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후 동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9년 2월에 개정 및 공포되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 실시 근거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5년 이내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규정 및 차등보험료율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 한편, 차등보험료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통계적 검증을 거쳐 '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차등평가모형의 적합성을 개선하였다.

나. 보호예금 및 부보금융기관 범위 조정

- 공사는 그간 외화예금('08. 11)과 퇴직연금적립금('09. 6)을 부보대상으로 신규 편입하는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0년 중에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확대, 금융권역별 금융상품 및 부보기관의 보호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금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증권금융예수금을 보호금융상품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변액보험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으나,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지급계약은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고, 최근 보험계약자의 수익성 추구 경향에 따라 변액보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 파산시 보험금 수급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어 최저보장보험금 지급 약정에 대한 보호편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은 현재 보호대상인 증권투자자예탁금과 매매대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매수대기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다는 예금적 성격은 동일함에도 보호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증권금융예수금은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수신이 가능함에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도 투자매매·중개업자로 분류되어 동 예수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금융상품에 대하여도 보호편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외에도 부보금융기관 조정을 통한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였다. 우선 장내 파생상품거래예수금의 보호대상 편입 추진에 따라 그동안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던 전업선물회사의 부보금융기관 편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 잔액이 없음에도 부보대상기관으로 편입되어 최소 예보료만을 납입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부보제외를 추진하였다.

- 이러한 추진 노력을 뒷받침할 예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10. 9)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다.

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개선

-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여부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장 등에 예금보호 여부 이외에 보호한도 등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예금자보호안내문을 개정(3월)하였다. 또한 부보금융회사 표시제도 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부보금융회사의 적정한 표시제도 이행을 유도하였다.

- 또한, 예금자가 정확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창구비치형 스탠드, ATM 부착용 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고, 리플렛을 개선하여 전국 11,000여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공(3월)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표시제도 안내」 코너를 신설(9월)하였다. 또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민생경제



담당자 등에게 예금자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지자체 주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9~11월)하는 한편, 표시제도 안내 등 예금자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및 협회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창구인 「예금보험제도고객의견단(現, 크레슈머단 전문1그룹)」을 설립(10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법안이 제출(11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라. 기타 제도 개선

- 이외에도 공사는 그간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11월)되어 계류 중에 있다.
-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 업무 근거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 부실책임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부실책임추궁 확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법원행정처를 추가함으로써 공탁금과 관련된 부실책임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년중 유효기간 도래가 예정된 부실책임자에 대한 일괄금융조회권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예금보험료 과오납시 공사의 청구권 및 부보금융기관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공사가 개산지급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명시적인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최고 한도와 관련된 일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추진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공사는 동 기금의 자생력 확보와 부보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용역과 정책심포지엄 개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다.
- 2006년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7년 5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07년 10월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계정을 분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은 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인하, 면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운용체계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2010년 9월 은행채의 신규 편입을 통해 운용자산 다각화를 꾀하는 한편, 2010년 10월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용의사결정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운용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및 기존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기금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운용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앞으로도 공사는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여유자금 운용을 지속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 공사는 2010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 포함)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기관평가단 및 기관장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다.

- '10년 6월에 발표된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평가 'B' 등급, 기관장평가 '보통' 수준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 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공사는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및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10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금융성 기금 7개 중 3위, 전체 기금 35개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2절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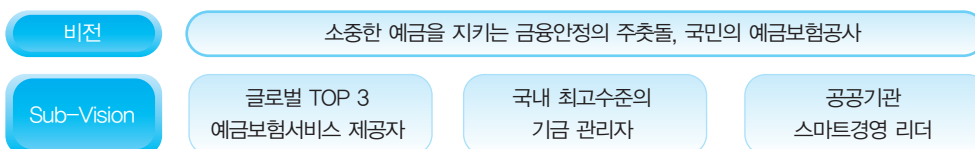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추진배경

- 공사는 2005년 3월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 리스크 상시감시 및 적기정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을 처음으로 설정하여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상을 명확히 한 바 있다.
- 이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의 설립목적을 비전 및 경영이념에 반영하고자 임직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전과 경영이념을 수립하였다.
- 또한, 2010년 11월 전략체계의 구조적 체계성 강화 및 내용적합성 확립, 그리고 단계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대내외 환경변화분석 및 내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변경, Sub-비전 및 핵심가치를 수립하였다.

나. 비전 체계

(1) 비전 및 Sub-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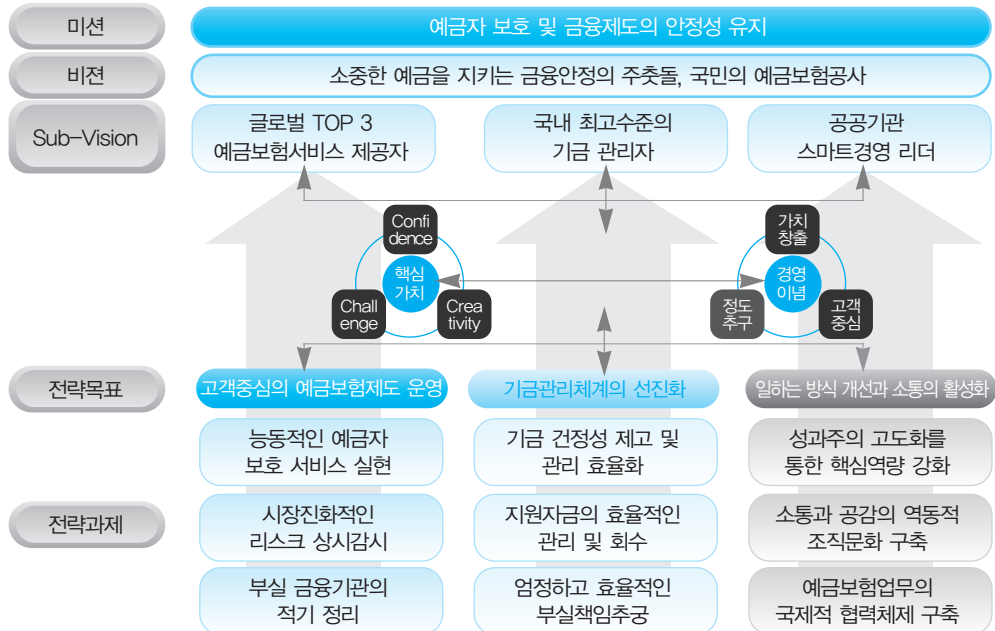




(2) 비전 정의

비전문구	구분	내용
소중한 예금	사업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의 금융상품(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등")
지키는	사업양식	예금보험이라는 공적 보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이를 법적·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행사
금융안정	달성목표	예금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주춧돌	역할설정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예금보험제도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존립기반	공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사업이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존립 기반이 국민임을 명확히 함

(3)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공사는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3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공사의 핵심사업을 9대 전략과제로 수립하였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단계를 5개 년도별(2011~2015년)로 구체화하였다.

〈표 II-2〉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전략 목표	전략 과제	2011년 세부 추진계획
I. 고객 중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능동적인 예금자 보호서비스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노력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
		금융유관기관 및 부모금융회사 등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부실 금융기관의 적기정리	정리업무 효율화
		보험금지급 업무 개선
II. 자금관리체계의 선진화	기금 건전성 제고 및 관리 효율화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 관리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관리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노력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노력
		보유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MOU관리의 효율성 제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부실책임자 사후관리 강화
III. 일하는 방식 개선과 소통의 활성화	성과주의 고도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부실책임조사의 효율성 강화
		핵심업무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절감
		인력관리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보수 제도 운영
		성과관리 제도의 적정성 제고
	소통과 공감의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CS 경영체계 구축
		IT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예금보험업무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대내외 소통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업무 추진
		해외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성과 전파



2. 고객 만족 경영

가. 휴면예금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 공사는 예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 완성 이전에 예금자들이 휴면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2005년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휴면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 개설, 개별 우편안내문 발송, 신문광고, 직통 안내전화 개설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 개별 우편안내문 발송대상자 및 발송횟수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강화하였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5만 7천여 명의 예금자가 203억원의 예금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II-3〉 휴면예금보험금 수령 실적

(단위 : 명, 억원)

2006년 4월~12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389	71	31,794	87	6,119	28	2,522	13	588	4	57,412	203

나. 파산재단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

- 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전직 임직원이 구직활동 등을 위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거나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급하는 「파산금융회사 경력 확인서 및 부채 증명원 발급서비스」를 2007년 4월부터 실시하였다.
- 공사는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0년 12월 현재까지 336개 파산종결재단 전직 임직원 28,386명의 인사자료에 관한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부채증명원 발급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파산금융회사와 연계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써 파산금융회사의 전직 임직원이나 채무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파산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표 II-4〉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실적

(2010년 12월말 현재)

구 분	경력확인서 ¹⁾	경력증명서 ²⁾	부채증명원 ³⁾	합 계
건 수	129	365	461	955

주 1) 경력확인서 : 법적종결 파산재단 임직원의 경력확인서(2005.12.27 서비스 시행)

주 2) 경력증명서 : 파산진행 및 사실상종결 파산재단 임직원의 경력확인서(2007.4.30 서비스 시행)

주 3) 부채증명원 :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대출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원(2006.2.28 서비스 시행)

다.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보유 자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배당재원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소재 불명인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하여 '미수령 배당금' 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을 전개해 오고 있다.

- 동 운동 전개 후부터 2010년 말까지 공사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파산채권자 총 79만 명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새로 파악된 주소지에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중 상반기 89개 파산재단 107,219명, 하반기 69개 파산재단 107,945명, 합계 215,164명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에 「미수령 배당금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자가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직접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0년 중 2,895명이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에 접속하여 배당금 유무를 확인하였다.

- 공사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도에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배당금 90억원(39,551건)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을 전개한 2005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920억원(359,432건)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배당금을 파산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표II-5〉 2010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종 금	금 고	신 협	계
2010년	금액	4	0.01	0.5	13	72	0.2	90
지급 실적	(건수)	(56)	(14)	(1,813)	(428)	(36,789)	(451)	(39,551)
2005. 8~	금액	101	3	1	343	1,470	2	1,920
2010.12	(건수)	(212)	(1,767)	(4,234)	(13,122)	(338,647)	(1,450)	(359,432)

라.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개산지급금 지급

● 개산지급금 제도는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분을 매입하고 동시에 파산재단의 예상배당률을 근거로 개산지급률을 산정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파산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예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10. 4. 16 파산선고된 으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를 포함한 파산채권자는 향후 파산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등에 따라 전일저축은행 및 으뜸저축은행 예금채권자에 대해 219억원의 개산지급금을 지급하였다.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가. 윤리경영

●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0년에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4대 추진전략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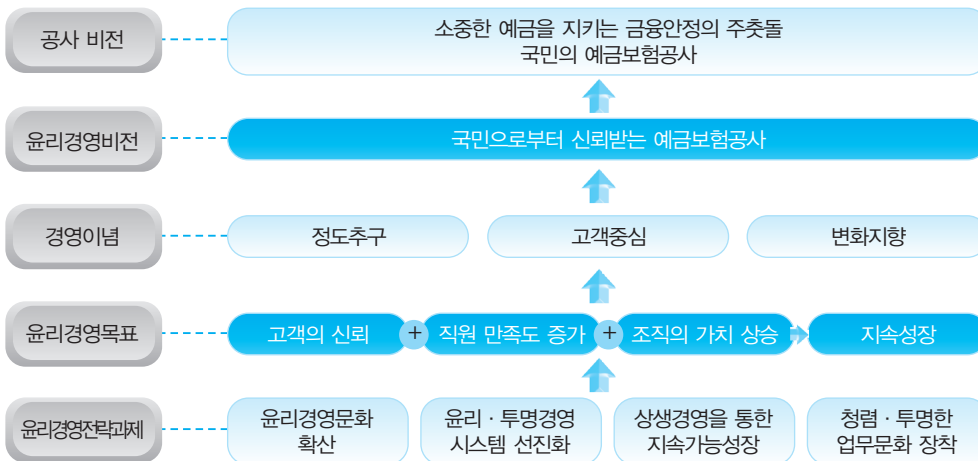
● 2010년 공사는 그 동안 마련한 윤리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문화 확산, 윤리·투명 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청렴·투명한 업무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였다. 특히 윤리경영 자가점검·윤리교육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켰으며, UN이 주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공사는 2007년 8월 가입) 이행상황 보고 및 지식경제부 주관 윤리경영 실태조사(KoBEX) 참여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윤리적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그림II-1〉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나. 사회공헌활동

●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는 보람을, 수혜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이란 모토 아래 사회공헌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문화 활성화 위해 노력하였다.

● 2010년 중 임직원의 기부금(1구좌 5,000원) 및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해 「예보사랑나눔기금」 1억 5,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예보꿈나무장학기금」 2,400만원을 조성하였다.



- 2010년 주요활동으로는 2005년 11월 이후 1사1촌운동으로 결연을 맺어온 농촌마을을 일손이 부족한 봄·가을 농번기철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과열매 숙기, 사과열매 따기행사 등을 통한 일손돕기 및 농촌마을 체험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농간 상호유대 강화 및 농촌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 한편, 부서별로 19개팀을 편성하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1부서1도움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는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8월에는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6회 예보꿈나무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으며, 전년도 선발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지급이 1회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는 공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장애우학교인 정진학교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토요일의 보조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과학의 날 행사 등 학교 특별행사도 지원함으로써 학사 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그밖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대도심 속 휴식 및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는 청계천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매월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활동으로 천안함 유가족 돕기운동 참여, 북한의 폭격으로 실의에 빠진 연평도 주민 돕기운동 참여, 송가원 장애아동시설과 자매결연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등 임직원의 따뜻한 사랑 나눔을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II-6〉 사회공헌활동 주요 내역

활동명	수혜대상/ 관련단체	활 동		후원금 · 비용 (천원)
		횟수	참여인원	
1부서1가정 돕기	어린이재단 등	138	368	32,222
특수학교 지원	서울정진학교	8	41	179
1사1촌 운동	예산군 운곡리	2	94	7,497
무료급식 지원	나눔의 동지	12	94	9,471
사랑의 집고치기	해비타트	4	38	6,000
청계천 환경정화	청계천봉사자	9	69	501
사랑의 헌혈	대한적십자사	3	3	-
사랑의 동전모으기	월드비전	2	117	1,431
개별/그룹활동		83	83	
예보꿈나무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청소년	1	-	10,000
	국가보훈처, 제1전투비행단	2	-	6,85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	10,000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1	-	3,000
	나눔과 기쁨	1	-	3,00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	-	3,180
	지구촌 사랑나눔	1	-	5,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	10,000
	전국재해구호협회	1	-	6,000
	승가원	1	-	15,000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	-	2,000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구로지회	1	-	3,000
	미셀지역아동센터	1	-	1,000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1	-	1,000
	청소년선도위원회	1	-	2,000
	기타	-	-	2,100
	기타 사회공헌활동비 등	-	-	1,038
소 계		277	907	141,474



4. 비전달성을 위한 정보화

가. 정보화 사업 추진

● 공사는 비전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IT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정보화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는 「정보활용 전략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첫째, 기금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문제여신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축은행의 여신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략적인 정보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의 전략목표와 연계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둘째, 웹메일 백업시스템 구축과 포탈 기능개선을 통해 IT서비스의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IT서비스 제공”의 전략목표에 연계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셋째,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방어장비 도입, 서버팜 부하분산, SAN 스위치 증설, Window서버 Database통합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전략목표에 연계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특히 대내·외 환경분석 및 각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사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3년간의 정보화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7〉 2010년도 정보화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 목표	정보화 이행과제
I. 전략적인 정보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 기금운용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구축(09.10~10.6)
	● 문제여신검색시스템 구축(10.4~8)
	● 정보화중장기전략계획 수립(10.7~12)
	● 신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10.8~12)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I. 사용자 중심의 IT서비스 제공

- 웹메일 백업시스템 구축(10.5~7)
- 포털 기능개선 사업 추진(10.12~11.4)
- DDos 공격 방어장비 도입(10.3)
- 서버팜스위치 모듈 추가 사업(10.4~9)

III. 정보자원통합 관리체계 구축

- SAN Switch 포트 증설 사업(10.8~12)
- 국제표준 ISO/IEC20000 인증 획득 추진(10.7~12)
- Window 서버의 DataBase 통합(10.10~11.2)
- SSO(Single Sign On) 시스템 재구축(10.9~11.4)

〈그림II-2〉 중장기 정보화계획 추진체계('08~'10)



나. IT서비스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 획득

● 공사는 2007년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21개의 IT서비스운영관리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통합 IT서비스 운영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였고, IT서비스 운영관리체계에 대하여 국제표준 ISO/IEC20000 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IT업무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IT서비스 품질향상의 추진력으로 삼고자 ISO/IEC20000인증을 추진해왔다.

● ISO/IEC20000 인증은 IT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고객 및 임직원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제도로써 공사는 2010년 12월초에 공사 고유 업무를 지원하는 전체 IT서비스를 대상으로 ISO/IEC20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 이번 공사의 ISO/IEC20000인증은 iSMF(IT서비스관리포럼) 및 UKAS(영국품질경영인정원)로부터 동시에 획득한, 연기금 운용 공공기관 중 최초의 인증으로 공사가 대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IT서비스가 국제표준규격에 부합되고, 그 운영내용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국제적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사는 이번 ISO/IEC20000 인증획득을 기회로 IT서비스 운영관리체계가 국내·외 Best Practice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IT서비스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LRQA(영국로이드인증원) 등의 사후인증심사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별 내부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 품질점검과 개선작업을 계속하여 IT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공사는 임직원간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9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서 배치 후 6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년인턴과 대학생인턴에 대해서도 직장생활 및 업무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리능력개발연수 중 승격자와 승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더십양성과정을 2박3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리더십 개발 과정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리더십심화과정은 팀장급을 대상으로 조직개발 및 변화혁신과 관련하여 2회 실시하였다.

- 구성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임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임원과의 대화(탕데이)'와 '부서장과의 대화(호프데이)'를 총 64회 실시하였다. 또한,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의 조성을 위해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2010년도 노사화합 가족사랑축제'를 11월 중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노사공동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가족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와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 등 문화행사도 개최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한편,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해 온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가족친화경영의 추진을 위해 기본 방침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였다. 가족친화경영을 공사의 경영이념인 '정도추구'의 하위 경영이념으로 정립하고, 가족친화경영의 기본 방침 및 추진원칙을 수립하였다. 한편, 공사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AA" 등급)을 획득하였다.

- 공사가 신나는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연중 운영 중인 혁신체험연수 프로그램에 9개팀, 총 35명이 참여하였고, 4월에는 '어린이 KDIC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직원 자녀들을 초청하였다.

나. 예금보험기능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 공사는 2010년 2월 조직개편시 예금보험제도 개선, 저축은행 리스크감시 및 정리기능 업무와 관련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하였고, 회수 관련 자산관리기능을 최소화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다.

- 또한, 지속적인 부서간 업무 재조정 등을 통하여 인력운용 및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의 합리성 제고

-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를 도입하였다. 2006년 부서단위 BSC 평가를 실시한 이래, 2007년 평가단위를 팀 단위까지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BSC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10년에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연계하여 BSC 지표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인력과 자원을 핵심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성과평가결과의 완전 공개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설치 등 평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 3 장

기금 관리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에서는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진행 중인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구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상황

가. 특별기여금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바,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0년에 6개 부보금융권에서 총 9,871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III-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특별기여금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



○ Annual Report 2010



〈표Ⅲ-2〉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¹⁾	합 계
			생 보	손 보				
2003	4,775	156	889	185	20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1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합 계	42,368	1,343	9,690	2,201	81	3,404	767	59,857

주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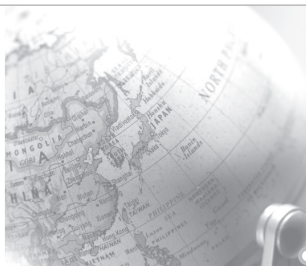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 52조 3,064억원을 수령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정부출연금 수납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이후로는 정부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 예보채 발행금액은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는 정부의 상환대책에 의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상환기금채 발행,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III-3〉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 계	871,599	871,599	—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 공사는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의거 공사는 2010년도에 6조 8,100억원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였다.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4년채가 2조 1,200억원, 5년채가 4조 6,900억원으로 모두 고정금리채권이다. 한편, 2010년 중 만기도래한 상환기금채 7조 4,4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0년 말 발행잔액은 26조 6,900억원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 III-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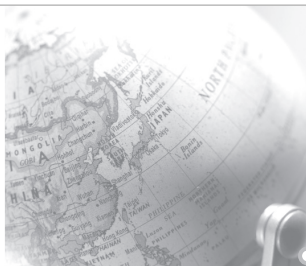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합 계	410,005	143,105	266,900

마. 차입금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금지급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더불어 재정차입금 전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거 2003년 1월 1일자로 그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신규 차입 실적이 없으며, 2010년에 IBRD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0년 말 차입금 잔액은 3,504억원이다.



〈표III-5〉 상환기금 차입금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액				상 환 액	잔 액
	금융회사 차입	차 관 ¹⁾	재정차입	합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79,747	3,504

주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 원

가. 개 관

-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보험금 지급, 출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인정된 금융회사의 정리비용을 부담한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상환기금은 2010년 한 해 동안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총 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되었다.

〈표Ⅲ-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2010년도)

(단위 : 억원)

금융권	출연	보험금지급 ¹⁾	합계
은행	0.2	—	0.2
금융투자	83	—	83
보험	—	—	—
증권	—	—	—
저축은행	—	—	—
신협	—	△1	△1
합계	84	△1	83

주 1) 보험금 이종자금액 환수

- 2010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844억원이다. 이중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016억원(16.8%),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이 지원되었다.

〈표Ⅲ-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누계)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권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은행	222,039	139,093	—	81,064	—	442,196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험	159,198	31,191	—	3,495	—	193,884
증권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축은행	1	4,157	72,892	—	5,969	83,019
신협	—	—	47,402	—	—	47,402
합계	507,937	186,016	303,124	105,799	5,969	1,108,844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 공사는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매각일 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매각계약서를 1999년 12월 23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0년 중 제일은행 소송관련 손실 등에 대한 사후손실보전을 위해 0.2억원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였다.

(2) 금융투자사

- 공사는 현투증권 매각 당시까지 종결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현투증권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0년에 83억원을 출연하였다.

(3) 상호저축은행

- 2010년 중 공사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III-8〉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09이전	2010	2009이전	2010	2009이전	2010
신 충 북	100	-	-	-	161	-
기 산	-	-	-	-	541	-
동 화	-	-	-	-	639	-
일 신	-	-	-	-	155	-
동 아	-	-	-	-	104	-
경 북	-	-	-	-	170	-
새 누리	-	-	13	-	413	-
대 원	-	-	-	-	563	-
충 일	-	-	-	-	89	-
대 전	-	-	-	-	102	-
해 동	-	-	-	-	263	-
충 남	-	-	-	-	45	-
부 산 2	-	-	-	-	271	-
유 니 온	-	-	39	-	518	-
아 름	-	-	-	-	615	-
한국투자(동원)	-	-	63	-	783	-
엠에스(조일)	-	-	29	-	738	-
도 민	-	-	28	-	709	-
경 기	-	-	254	-	1,654	-
부 민	-	-	243	-	-	-
한 마음	-	-	521	-	-	-
경 북	-	-	81	-	-	-
신라(텔스)	-	-	775	-	-	-
하 나 로	-	-	422	-	-	-
솔 로 몬	-	-	663	-	-	-
제 이 원	-	-	325	-	-	-
상 업	-	-	701	-	-	-
케이알앤씨	1 ¹⁾	-	-	-	-	-
합 계	101	-	4,157	-	8,532	-

주 1) 2001년 12월말 정리금융공사로 합병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출자



〈표III-9〉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연 도	기관수 ¹⁾	지급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0.4
2010	—	—
합 계	—	72,892

주 1) 상환기금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70개임

3. 회 수

가. 개 관

●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된 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폐쇄된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금융회사에 대출한 자금은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0년에 2조 9,29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총 47조 5,147억원을 회수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Ⅲ-10〉 상환기금의 회수(2010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²⁾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3,622	8	420	1,907	—	15,958
금융투자	—	23	0	4,486	—	4,509
보 험	4,326	0	152	109	—	4,587
종 금	352	—	1,934	—	—	2,285
저축은행	—	6	1,460	—	—	1,465
신 협	—	—	491	—	—	491
합 계	18,300	37	4,456	6,503	—	29,295

주 1)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주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표Ⅲ-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²⁾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58,129	695	18,181	57,696	—	234,702
금융투자	12,121	3,230	75	17,026	—	32,452
보 험	30,250	884	4,266	2,325	—	37,725
종 금	1,349	59	79,504	—	—	80,913
저축은행	—	340	48,998	—	5,969	55,306
신 협	—	4	34,045	—	—	34,049
합 계	201,850	5,213	185,069	77,047	5,969	47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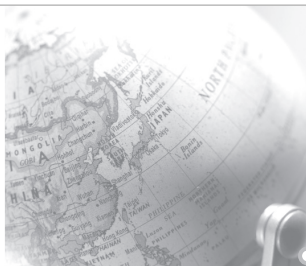
주 1)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주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 공사는 2010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금 회수 등으로 총 1조 3,974억원을 회수하였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9년 11월 지분 7% 매각에 이어 2010년 4월 9%의 소수지분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1조 1,606억원*을 회수하고 배당금을 통해 532억원*을 회수



하였다. 특히, 2010년 블록세일은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 고조로 인해 할인 없이 매각할 수 있었으며 과거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 가중평균 할인율(3.03%) 대비 352억원을 초과 회수하였다. 이외에도 2010년 8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68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을 통해 123억원을 회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유주식 매각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0년 10월 4일부터 제주은행 보통주에 대한 장중매각을 진행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28억원을 회수하였다.

*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은행계정 및 종금계정 합산 기준

(2) 보험회사

- 공사는 2010년 3월 대한생명 상장공모(IPO)시 구주매출(2.23%)을 통해 1,586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계획안에 따라 FY '09 당기순이익(3,367억원)의 75% 상당액인 2,525억원을 회수(2010.7월)하였다.

(3) 기타

- 공사는 舊 현투증권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3개 주식(웅진케미칼, 동양메이저, 현대정보기술) 등을 장중매각, 공매를 통해 총 127억원을 회수하였다.

- 공사는 2010년 3월~7월중에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 지분 2.05%(1,200만 주)를 블록세일, 채권단 공동매각 등으로 3,023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 새한미디어 지분도 채권단 공동매각 등으로 총 688억원을 회수하였다. 2010년 5월 삼성생명 상장공모(IPO)시 구주매출(6.64%)을 통해 1,626억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10월 중에는 상장주식 3개 종목(영흥철강, 진로, 디초콜릿)을 장중매각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16개 종목 등은 공매 방식으로 매각하여 103억원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공사는 2010년 중 블록세일, 구주매출, 장중매각, 공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총 5,440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케이알앤씨*를 통한 회수

- 케이알앤씨는 인수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하여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 총 7조 6,795억원을 회수하여 이중 7조 720억원을 공사에 상환하였다.

- 2010년 중에는 공사에 매각 위임된 주요 유가증권 매각(총 5,440억원)을 제외하고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및 국내의 소송 절차 진행,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1,096억원을 회수하였다.

* 케이알앤씨는 한아름증권·금고를 흡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RFC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차, '08. 8월)」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로 전환('09. 11월)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회수익문, 추정손실, 비업무용부동산등)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

〈표Ⅲ-12〉 케이알앤씨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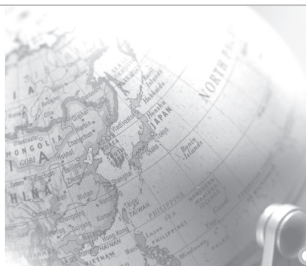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년도	자산구분	대상자산	매각액	매각방법
2010년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964	직접 추심 및 소송
		외화 채권	29	
		소계	993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5,520*	채권단 공동매각, 블록세일
	부동산	업무용 빌딩 등	23	공매 및 수익계약
		합계	6,536	
누적	대출채권	원화 채권	34,656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채권	9,048	
		소계	43,704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29,253*	공동매각, 블록세일 등
	부동산	업무용 빌딩 등	3,838	공매 및 수익계약
		합계	76,795	

* 공사에 위임된 KR&C 보유 주요 유가증권의 2010년 매각 회수액(5,440억원) 및 누적액이 포함

라. 파산배당

- 2010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파산재단으로부터 741억원, 중금, 저축은행 및 신탁 파산재단으로부터 4,224억원 등 총 4,965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10년 말까지 총 18조 8,492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II-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융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10년	1999년~2010년 총회수액
은 행	5	589	18,552
보 험	10	152	4,266
증 권	4	-	75
종 금	22	2,255	81,742
저축은행	91	1,478	49,801
신 협	325	491	34,056
합 계	457	4,965	188,492

주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마. 대출금 회수 등

● 공사는 2010년 말까지 대출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자금은 전액 회수되었다. 또한, 출연금 정산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5,213억원으로, 2010년 중에는 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8억원, 한투·대투·현투증권으로부터 23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6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37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가. 보험료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고 있다. 2002년까지의 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른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는 2010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1조 1,600억원의 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Ⅲ-14〉 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합 계 ³⁾
			생 보	손 보			
인수액 ¹⁾	-	-	1,414	379	848	2,017	4,658
1997	321	-	-	-	-	-	321
1998	1,292	-	386	143	132	390	2,343
1999	1,975	51	1,011	249	336	377	3,999
2000	2,630	156	1,402	379	233	323	5,123
2001	4,139	218	1,938	478	39	529	7,441
2002 ²⁾	4,361	262	2,295	485	130	604	8,137
2003	4,775	312	2,580	535	73	667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11,600
합 계	54,886	3,059	34,623	7,977	2,051	14,840	117,436

주 1) 1998년 4월 기금 통합시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인수액

주 2) 2002년까지의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포괄 인계

주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제외

〈표Ⅲ-15〉 금융권별 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¹⁾	8/10,000	15/10,000 ²⁾	15/10,000 ³⁾	15/10,000	35/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주 1)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율 변경

주 2) 2007년부터 금융투자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보험료율 30% 인하

주 3)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표준비율의 5%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



나.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상환대책에 따른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출연금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에 귀속되며 공사는 2010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16억원의 출연금을 수납하였다.

〈표III-16〉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은행	금융투자	보 험		총 금	저축은행	합 계 ¹⁾
			생 보	손 보			
인수액 ¹⁾	-	-	-	-	24,000	7,998	31,998
1998	-	-	-	-	-	200	200
1999	300	1,050	-	30	-	715	2,095
2000	60	32,814	-	32	-	-	32,906
2001	126	759	30	260	1,500	-	2,675
2002 ²⁾	125	500	-	330	-	390	1,345
2003	30	-	650	200	-	-	880
2004	340	200	600	200	-	-	1,340
2005	220	200	-	-	-	1,250	1,670
2006	380	800	-	200	-	1,340	2,720
2007	-	-	-	-	-	-	0
2008	160	11,005	-	-	-	556	11,721
2009	766	4,312	419	342	17	777	6,633
2010	80	584	900	30	-	-	1,594
합 계	2,587	52,224	2,599	1,624	25,517	13,226	97,777

주 1) 1998년 4월 기금 통합시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인수액

주 2) 2002년까지의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포괄 인계

주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제외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다. 외부차입금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험금지급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2003년 1,046억원, 2004년 618억원 등을 각각 차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이 중 신탁계정의 외부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 425억원, 2005년 385억원, 2006년 60억원, 2008년 50억원 등을 각각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되어 현재 외부차입금 잔액이 없으며,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외부차입금 잔액이 없다.

2. 지원

가. 개 관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인정된 금융회사의 정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 상호저축은행계정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9,9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상호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총 4조 5,27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Ⅲ-17〉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2010년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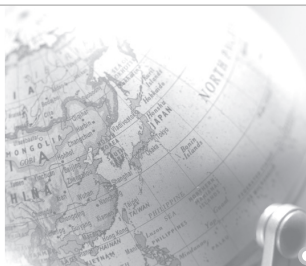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저축은행	345	5,447	3,003	928	219	9,942

〈표Ⅲ-18〉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누계)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저축은행	1,211	24,542	14,415	4,891	219	45,278

주)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제외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상호저축은행

● 공사는 2009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우량 자산 및 예금 등을 공사가 2010년 설립한 가교금융회사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로 계약이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하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순자산부족액 5,182억원을 출연하고 34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에 대하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인수대금 928억원을 대출하였다.

〈표Ⅲ-19〉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연 도	기관수 ¹⁾	지급금액
2003	1	764
2004	3	1,770
2005	7	4,527
2006	7	326
2007	6	1,345
2008	11	906
2009	9	1,774
2010	11	3,003
합 계	-	14,415

주 1) 예보기금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13개임

3. 회 수

가. 개 관

●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회수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해준 자금을 상환 받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0년에 3,91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1조 88억원을 회수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Ⅲ-20〉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0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합 계
저축은행	15	423	2,080	1,398	3,916

〈표Ⅲ-21〉 예금보험기금의 회수(누계)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합 계
저축은행	2,530	568	3,651	3,339	10,088

주)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제외

나. 파산배당

- 2010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2,080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누계실적으로 총 3,651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Ⅲ-22〉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용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10년 1월~12월	2004년 이후 총회수액
저축은행	16	2,080	3,651

주)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제외

다. 대출금 회수 등

- 공사는 2003년 이후 경북저축은행 등 12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출한 4,891억원 중, 2010년에 10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398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여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총 3,339억원을 회수하였다.



제 4 장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및 MOU 관리

● 제1절 리스크 상시감시 체제 구축

1. 리스크 감시 기반 확충

- 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보험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스크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상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기능의 명문화, 차등평가모형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왔다.

가.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업무의 법적근거 명확화

- 공사가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예금자보호법 18조에는 사전적 리스크감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리스크감시 기능 업무가 제한되는 등 업무상 애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리스크감시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기능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 2009년 12월 마련한 「예금보험업무 활성화 방안」에서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협의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보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지원하였다. 그 후 11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 심의에 대비하여 사전 설명을 실시하였다.

-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사 리스크감시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감시 업무가 활성화되고 기금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차등평가모형 개선

-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차등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14년에 시행될



○ Annual Report 2010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0년 8월 차등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대상 금융권역, 평가주기 및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9월에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 증권·보험업권 보호기구(CIPF, Assuris)의 정성평가모형 등 해외의 차등평가 모형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존 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하여 차등평가모형을 개선하였다.

2. 상시감시 기능의 활성화

-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보험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스크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데스크운동을 통해 개별 부보금융회사 및 각 금융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상시감시하고 있으며,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KDIC 금융현장정보> 등 부보금융회사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당국 등에 제공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공사의 리스크평가모형 결과 등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대한 정보를 부보금융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Best Practice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활동을 유도하였다.
-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상시감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변화된 리스크감시 환경을 반영하여 리스크 감시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방법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새로 개발된 리스크지수(RI)모형을 상시감시에 활용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금융권별로 상이한 감시모형에 의한 평가(RE) 및 예측분석보고서(RF)의 보고 주기를 통일하였다. 또한, 경영위험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의 종류에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을 새로 추가하고 각 금융업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감시 단계별 분류기준 조정 및 재량의 행사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감시하기 위하여, 공사는 업권별 혹은 부보금융회사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데스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데스크제」 등을 통하여 각 금융권역별 또는 개별 금융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인디케이터(Risk



Indicator)를 발굴하고,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감염경로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금융현장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주요 지표, 주요 금융회사의 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DIC 금융시장동향> 자료를 작성하여 정책 당국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중 발생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남유럽 위기 대응반」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전 금융권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리스크요인에 대하여는 각 권역 담당자들을 포함한 위기대응반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 이와 같은 리스크감시의 결과, 2010년에는 924건의 상시감시 보고서를 생산하여 이중 353건을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 및 학계, 언론, 공사 유관 인사, 부보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되는데 이바지하였다.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다른 금융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수신변동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리스크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파견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정상화 진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고 있다.

<표Ⅳ-1> 부문별 인디케이터 선정 현황

(단위 : 개)

부문	주식 및 채권시장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실물시장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합계
인디케이터	3	3	3	6	4	5	24

3. 조사 및 공동검사

- 공사는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 수행, 부보금융회사 업무부담 경감 및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간 2009년 9월 15일 「금융정보 공유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유하는 금융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와 관련된 금감원 수시정보(은행 외화관련 정보 3건)를 최초로 공유하였으며, 공사 보유 금융정보 25건도 금감원에 제공하였다.

- 아울러 유관기관간 미공유 정기보고서의 공유도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의 경우, 대외보고서 및 외환보고서 10건이 추가 공유되어 공유실적이 전년도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서도 전년도 818건에서 432건 증가한 1,250건의 보고서를 공유하였으며, 입수율도 전년도 96.3%에서 3.7%p 상승한 100.0%를 기록하였다.

- 또한,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감시업무의 일환으로 상시감시 및 리스크평가모형을 통한 리스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낮거나 특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금융회사의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공동검사대상을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참여하고, 해당기관의 리스크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경영진에게 촉구하였다.

- 공동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9월 최초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09년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1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2001년 이후 62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2010년에는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검사대상을 대폭 확대('09년 15개→'10년 24개)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리스크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2010년 7월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공동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차별화된 공동검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검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공동검사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공사의 검사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시장친화적 리스크감시

- 공사는 고객지향적인 리스크분석보고서의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조언자(Risk Ad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공사의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리스크감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보고서의 제공대상을 678명에서 719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현장정보 만족도 조사 및 청계금융포럼 등 시장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파악된 리스크요인 및 보고서 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공사 상시감시를 통하여 산출된 금융회사 리스크 평가정보 및 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공동검사를 통한 현장리스크 확인 등 시장친화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 이외에도 공사는 전문가 네트워크인 「청계금융포럼」을 손보·저축은행권역까지 신규 확대하였고,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금융권 간담회,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시장정보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청계금융포럼」 정기모임에서는 2010년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주요 보험환경 및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습득하고, 이를 상시감시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상시감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표Ⅳ-2〉 청계금융포럼 회원 구성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저축은행
회원구성	국내은행 16인 외국계은행 3인 연구기관 1인 법무법인 2인 회계법인 1인 신용평가사 1인 투자증권 1인	국내생보사 7인 외국계 생보사 2인 보험계리컨설팅 1인 연구기관 1인 협회 1인 교수 1인	국내손보사 9인 외국계 손보사 2인 연구기관 1인 개발원 1인 협회 1인	국내증권사 8인 외국계 IB 3인 연구기관 2인 법무법인 3인	저축은행 5인 회계사 1인 변호사 1인 중앙회 1인 공사 2인
인원수	25인	13인	14인	16인	10인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특히,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중 6개 저축은행중앙회 지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2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4개 저축은행(2003년 이후 총 68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연말에는 공사가 제공하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유용성 여부, 개선방향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융현장정보 등 공사 분석보고서 제공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12월)한 설문조사 결과, 부보금융회사 업무기여도 등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향상(78.3점⇒79.0점)되었다.

5. 리스크감시 역량 강화

- 공사는 직원의 리스크 상시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간부직원과 리스크감시 인력 대상 상시감시교실 개최, 전담데스크 및 리스크담당제 운영,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 개최, 부서별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 경영정보시스템(FIAS) 등 모형 개선에 따른 사용자별 맞춤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분석보고서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보고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보고서를 발굴, 시상하고 전 직원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 경쟁을 통하여 경영분석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010년 공사는 리스크 관련 부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리스크 상시감시교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09년 실시된 상시감시교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연수 운영을 도모하였다.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상시감시교실 개최 직전 리스크감시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시의성 있는 금융현장 이슈 등의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론과 실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강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상시감시협의회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와 정리업무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



- 그 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010년 6월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3개 기관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시장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다.

6. 리스크감시모형 기능 개선

- 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리스크감시모형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해 왔다.

은행, 보험권역의 경우 재무정보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모형(RE), 향후 일정시점 이후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리스크 예측모형(RF)과 리스크 수준과 추세를 분석하는 리스크지수모형(RI)을 운영해 왔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리스크평가모형(RE)과 리스크 예측모형(RF)을, 저축은행권역의 경우 상기 3개 모형과 함께 수신변동감시시스템(GMS : Growth Monitoring System)을 추가로 개발하여 리스크상시감시 업무에 활용해 왔다.

- 아울러 공사는 기존 리스크감시모형 개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형의 예측력 제고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는 리스크감시모형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상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리스크감시모형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용역을 통해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감시모형에 활용되는 통계 분석기법을 정비하였고,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의 변수값과 임계치 등을 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한 리스크감시가 가능하도록 이상치 적출 등의 분석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미개발 모형인 금융투자권역 리스크지수모형(RI)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모형결과를 웹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웹조회시스템도 구축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2010년에는 구축된 통합리스크감시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다. 리스크상시감시부서의 모형운영에 필요한 거시경제데이터를 주간 및 분기별로 등록하였으며, 사용자의 모형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및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은행·금융투자업·손보업권 등에 대해 업무보고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등을 통하여 리스크감시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숙련도 강화를 위해 사용자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자료입수방식 변경 등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감시모형시스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리스크감시 인력들의 모형 접근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감시업무의 효율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MOU 관리 등

1. MOU 체결 및 점검

-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됨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서울보증보험 등 총 6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를 관리하고 있다.
- 공사는 2010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09년도 4/4분기부터 2010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 주의 3건, 개선 3건, 통보 1건, 임원경고 3건, 임원주의 1건, 직원조치요구 7건 등 총 18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 재무부문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은 계획 대비 외화이자이익의 부진 등으로 2009년도 3/4분기 MOU 재무목표 중 1인당조정영업이익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는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2010년도 2/4분기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은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MOU 재무목표 중 ROA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목표를 미달성하였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금융감독원의 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감안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으로서 MOU 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조치를 면제하였으나, 우리은행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를 미달성하여 기관 주의 조치 및 여신심사·관리체계 개선 등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 비재무부문과 관련하여, 2010년도 1/4분기 MOU 점검결과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부동산 PF대출 관련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하여 거액여신 한도 설정 등 위험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도록 통보 조치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선박선수금환급보증금(RG) 관련 심사운용 체계의 불합리와 관련하여 심사기준 개선 등 심사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에 보고하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10년 1/4분기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개선 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귀책여부에 따른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2010년 2/4분기에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규모 및 원인 등에 대해 추가로 점검한 후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게 하여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임원 경고 및 직원 조치요구 등 10건의 개인 조치를 부과하였다.

- 공사는 향후에도 MOU 목표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경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미달성 시 귀책사유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등 보다 철저한 MOU 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Ⅳ-3〉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수정·추가 내역

(2010년 12월말 현재)

금융회사	MOU 체결(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금융지주	'01. 7. 2	'03. 1. 22	'04. 9. 22	-
우리은행(舊한빛은행)	'99. 1. 22 ¹⁾ ('00. 12. 30)	'05. 3. 23	'07. 12. 26	
광주은행	'00. 12. 30	'07. 3. 28	'10. 3. 23	
경남은행	'00. 12. 30	'09. 3. 30		
수협 신용사업부문	'01. 4. 25	'05. 3. 23 '07. 3. 28 '09. 3. 30	'03. 2. 12 '03. 7. 9 '05. 12. 21 '07. 12. 26 '10. 3. 23	-
서울보증	'00. 4. 12 ¹⁾ ('01. 6. 9)	'05. 6. 22 '07. 7. 18 '09. 6. 10	'02. 7. 10 '06. 6. 21 '07. 12. 26	-
제주은행	'00. 12. 30	-	-	'02. 4. 29 (신한지주앞 매각)
서울은행	'00. 12. 30	-	'01. 6. 29	'02. 12. 1 (하나은행앞 매각)
조흥은행	'99. 11. 12 ¹⁾ ('02. 1. 31)	-	-	'03. 8. 19 (신한지주앞 매각)
대투증권	'00. 9. 25 ¹⁾ ('02. 2. 20)	-	-	'05. 5. 31 (하나은행앞 매각)
한투증권	'00. 9. 25 ¹⁾ ('02. 2. 20)	-	-	'05. 3. 31 (舊동원지주앞 매각)
대한생명	'00. 4. 12 ¹⁾ ('01. 9. 5)	-	-	'02. 12. 12 (한화생명사입앞 매각)
우리카드(舊평화은행)	'00. 6. 7 ¹⁾ ('00. 12. 30)	'03. 6. 4	'02. 3. 25	'04. 3. 31 (우리은행 합병)
우리종금	'00. 12. 9	-	'01. 6. 29	'03. 8. 1 (우리은행 합병)

주 1) 해당 금융회사, 예보, 금감위 3자간 약정 체결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사는 MOU 운영과정에서 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MOU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중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MOU 체결 금융회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가.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MOU 관리제도 개선

-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에 따른 MOU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부채 증감 및 금융사고 내역 등을 점검 항목에 추가하여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산증대 방지를 위하여 MOU 재무목표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목표 부여 방식 등을 통해 MOU 재무목표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급 일부의 이연 지급과 목표 미달시 성과급 차감을 확대 등을 통해 단기 성과주의 방지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MOU 조치시 소명절차를 개선하여 조치의 투명성과 조치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한편, MOU상 일부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문구를 수정하여 2010년 7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일부 개정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 2010년 중 공사는 MOU체결 금융회사와 CEO 간담회 12회, 임원진 간담회 15회, 실무자 간담회 54회 등 총 81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MOU 업무 관련 통합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명절차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MOU체결 금융회사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시장상황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MOU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의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 지원

● 2010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의 이행부진사항 등에 대한 상시감시 분석자료 및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현안 정보 등 총 59건을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제공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사외이사 제공 정보의 질적 제고와 범위 확대를 위하여 2010년 1/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부터 점검결과 및 경영상 유의사항 등을 사장 명의의 협조 편지와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라. 테마별 시리즈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의 리스크관리 제고 노력

● 공사는 공사와 서울보증보험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모 및 MOU 체결 모범사례로서의 노력과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할 목적으로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 테마시리즈 분석을 통하여 사외이사 등에게 제공하였다. 동 분석은 서울보증보험의 운영 체계, 보증보험의 기능과 역할, 외부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및 MOU 체결 이후 경영성과 등의 테마로 구분하고 테마별 세부 Topic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자료를 사외이사 및 보증보험에 관심이 있는 정책고객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추가 세부자료 제공 및 관심주제를 신규 발굴하는 등의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제 5 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경영관리

● 제1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1. 다각적 정리방식의 실행

- 공사는 2005년부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공사가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하여 정리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6년부터 부실금융회사 정리 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사는 가교금융회사로 계약이전 후 지분 매각, 직접적인 제3자 계약이전, 파산처리,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시장 및 지역 환경, 부실금융회사 자체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정리방식을 모색하는 등 유연한 정리전략을 활용하여 부실금융회사 정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부실금융회사 정리현황

가. 가교금융회사(예쓰저축은행)를 통한 전북·옴슴상호저축은행의 정리

- 금융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적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군산)전북상호저축은행, (제주)옴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2008년 12월, 2009년 8월 영업정지를 명령하였다.

- 공사는 가교금융회사 활용방안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북·옴슴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예금 등 부채를 가교금융회사인 예쓰저축은행에 계약이전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단축을 통한 예금자불편 경감을 도모하였다. 예쓰저축은행은 2009년 3월에 설립한 가교금융회사로서, 전북·옴슴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2009년 4월, 2009년 11월 계약이전받아 영업 중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매각을 추진하고있다.



○ Annual Report 2010



나. 가교금융회사(에나래저축은행)를 통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정리

- 금융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주)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2009년 12월 영업정지를 명령하였다.
- 공사는 가교금융회사 활용방안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예금 등 부채를 가교금융회사인 에나래저축은행에 계약이전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단축을 통한 예금자불편 경감을 도모하였다. 에나래저축은행은 2010년 3월에 설립한 가교금융회사로서, (전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2010년 4월 계약이전받아 영업 중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에나래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 공사는 2010년 중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완료하였다. 경영관리인 주도로 경영관리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안내 등을 위한 단계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예금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예금자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제 6 장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의 관리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1. 공적자금의 회수제도의 개선

가. 공사 관재인 체제의 구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 12. 20 제정) 및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개정)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을 지원한 부보금융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01년 3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10년 12월 현재 전국의 96개 파산재단 중 95개 부보금융회사 파산재단에 공사 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 선임되어 공사 주관 하의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 파산선고 된 2개 파산재단의 경우에도 공사 관재인이 단독 선임되는 등 파산절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사 관재인 체제가 확고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표VI-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 체 파산재단	파 산 관 재 인		공 동 ²⁾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재 단 수	96 ¹⁾	91	1	4

주 1) 법적종결재단(361개) 제외, 공적자금이 미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및 2009년말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제외

주 2) 예금보험공사 법인(또는 직원)이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 공사는 지역통합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별로 묶어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더욱이 관재인 1인이 수개의 재단을 맡아 관리토록 하고 이들 재단을 1개의 사무실에 통합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파산재단 직원 및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금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 기타비용의 절감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 Annual Report 2010



- 또한, 1인의 관재인이 같은 재단을 장기간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근직원 및 타 지역 관재인과 정기적 순환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더불어 파산관재인 워크숍 및 지역별 파산관재인 간담회 개최, 학습동아리 활동 등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사와 파산재단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재인 역량강화를 도모함으로써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파산재단 실적경쟁 체제 구축

- 전체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 관재인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파산재단을 철저히 회수실적 중심으로 운영하고 파산관재인과 재단 보조인을 실적 우열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보조인의 채권회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있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파산재단 보조인의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파산재단 및 파산관재인 실적 평가시 공적자금 회수율, 자산정리율 및 경비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파산재단 간 공정하고 투명한 실적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성과급 지급은 물론, 실적 부진자 및 재단에 대해서는 해당 파산관재인을 교체하는 등 실적 중심의 운영체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라. 채무조정 활성화

- 공사는 파산재단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문 발송, 파산재단의 채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와의 업무협약, 청·파산이 예상되는 일반법인의 채무조정 허용 등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소액채무자 중 재산이 없는 급여생활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 완화를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에 시행된 일련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와 원활한 채권회수 및 채권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하였다.



2. 자산환가 및 배당회수실적 제고

-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업무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의 합동공매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공사 홈페이지에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물 정보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동산 수요자의 공매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한 바, 2010년 중 10회의 합동공매 실시 등을 통해 23건, 총 560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 없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파산재단별 개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공동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2010년 중 총 5회 실시)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한 결과 델코 지분 21%를 장부가(130억원) 대비 322%인 418억원에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였다.
- 파산재단 보유자산중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상표권, 양도담보물 등)에 대해서도 회원권 거래소매각 등을 통해 골프·콘도 회원권 15건(매각가총 25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추진

- 파산선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제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이러한 파산재단을 종결 대상 재단으로 선정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최후배당 실시를 거쳐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공사는 파산재단을 파산초기재단, 자산집중관리재단, 소송집중관리재단, 종결준비재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환가가 대부분 완료되고 소송이 종료된 재단을 종결준비재단으로 선정하여, 잔여자산 매각이후 최후배당을 거쳐 종결하고 있다.
- 이러한 합리적 종결 추진을 통해 2010년 12월말 현재 457개 파산재단 중 361개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96개 재단도 잔여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종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VI-2〉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 파산재단(A)		5	10	4	22	91	325	457
종결	종결재단(B)	1	6	2	-	41	311	361
	종결율(B/A)	20%	60%	50%	-	45%	96%	79%
진행재단(A-B)		4	4	2	22	50	14	96

제2절 보유자산의 관리

1. 파산재단 보유자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

- 공사는 기금,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보유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의 자산현황 조회·자산평가 및 월보 등 보고서 산출이 용이해지고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체계적 파산재단 관리가 가능해져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2. 자산 인수

●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2010년 말까지 인수한 자산은 총 22.4조원(인수액 기준)으로서 케이알앤씨 10.5조원, 한아름종합금융 10.6조원,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3조원이다.

●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자인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자산, 기타금융회사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인수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現 케이알앤씨)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년 12월말까지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549억원,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은행 등 5개 인수은행으로부터 1,588억원, 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 등 5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3,550억원, 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옴·전일 등 1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488억원, 파산절차 조기종결 대상 452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242억원, 한투·대투·현투증권 등 금융투자사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등 총 10조 4,489억원(인수액 기준)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표VI-3〉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2010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파산재단	2,112	39	추가 인수
	저축은행	2,072	952	전일

〈표VI-4〉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누계)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은 행	98,640	80,137	6개 은행(제일은행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58,094	3,242	421개 파산재단 (은행 5, 보험 9, 금융투자 2, 종금 20, 금고 76, 신탁 340)
	저축은행	14,193	4,488	12개 저축은행
	소 계	200,283	104,489	
한아름종금	종 금	110,225	106,262	16개 종금
한아름금고	금 고	34,831	13,467	41개 저축은행
합 계		345,339	224,218	-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케이알앤씨의 인수자산 관리

- 케이알앤씨는 한아름중금·금고를 흡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RFC를 페이퍼컴퍼니로 전환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할 뿐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산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0년 12월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잔액은 183조원으로, 이 중 129조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알앤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54조원은 외부 위탁관리하고 있다.
- 공사는 케이알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자산가치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였다.
- 아울러, 케이알앤씨 보유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였다.

〈표 VI-5〉 케이알앤씨 보유 자산(잔액)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산구분	직접관리	위탁관리	소계
대출채권	547	52,817	53,364
유가증권	16,923	-	16,923
부동산	685	1,185	1,870
구상채권	111,172	-	111,172
합계	129,327	54,002	183,329



제 7 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 제1절 부실책임추궁체계 개선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위규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 이를 위해 공사는 부실책임조사를 담당하는 조직(舊 조사부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두어 각각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의 유기적 연계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 舊 조사부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한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설치하여 2국 2부의 조직을 1국 1부로 축소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는 동시에 유기적 연계조사를 통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2009년 7월에는 부실채무기업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적 심의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귀책대상행위를 구체화하고 심의기준을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동 기준을 개정하였다.

●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과 대주주(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추



〈표Ⅶ-1〉 부실금융회사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증권	저축	신탁 ¹⁾	계
조 사 회 사	15	6	18	22	101	325	487
부 실 관 련 자	191	65	244	160	979	4,146	5,785
손실초래금액	14,080	33,266	30,482	55,977	35,862	9,179	178,846

주 1) 2010년 1월 1일부터 14개 신탁 파산재단이 신탁중앙회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통계에서 제외

2.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는 1,417건 1조 9,149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Ⅶ-2〉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증권	저축	신탁	계
기 관 수	15	6	18	22	98	311	470
피 고 수	191	83	276	181	1,249	7,256	9,236
청구건수	93	31	84	35	345	829	1,417
청구금액	1,004	342	2,435	3,043	6,436	5,889	19,149

-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법적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송업무지원을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9년 3월에는 「파산재단손배소송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손배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를 제고를 위하여 소송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손배소송 전담변호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한편, 2010년 9월에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적용하는 손해배상청구 기준금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액을 소송비용 대비 소송경제성 및 현실적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하향조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2,999건 8,217억원 상당의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224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총 2,795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표Ⅶ-3〉 부실금융회사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	저축	신협	계
(가)압류건수	37	7	94	124	1,208	1,529	2,999
(가)압류금액	76	47	421	1,002	4,352	2,319	8,217
가처분건수	10	1	2	41	87	83	224
회 수 금 액	102	54	208	659	1,006	766	2,795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71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였고,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시작하여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13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 한편,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를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다.
-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책임심의 결과 2010년 말 현재 853명에 대하여 14조 6,510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실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

〈표Ⅶ-4〉 부실채무기업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현장조사 기업수	부실책임	
	부실관련자	손실초래금액
966	853	146,510

2.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는 187건 9,8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회사의 법적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부실금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실금융회사 소송담당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송 및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지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한편, 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실금융회사를 대위하여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소가, 소송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소송에 보조 참가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보완하는 등 소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Ⅶ-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기업	피고	청구건수	청구금액
148	1,180	187	9,800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하여 975건 6,721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233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고, 2010년 말 현재 총 1,172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표Ⅶ-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가압류		가처분	회수금액
건수	청구액	건수	
975	6,721	233	1,172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 2000년 1월 21일과 2000년 12월 30일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사는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실관련자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와 행정기관 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요구권 등을 「예금자보호법」에 추가함으로써 조사권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23일에 실효예정인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을 2014년



3월 23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10년 12월말 현재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925,001명에 대하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부실책임자, 불법행위관련 고액채무자, 손배잔부채권의 소멸시효 도래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관련자 등 2,784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금흐름조사 및 사해행위조사 등 특별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는 발견재산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채권보전 및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가압류 60,933건(10조 6,886억원), 가처분 1,827건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이며, 총 7,21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Ⅶ-7〉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반·특별재산조사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조사인원	가압류		가처분 건수	회수액
		건 수	금 액		
부실관련자	925,001	60,933	106,886	1,827	7,218

- 공사는 2006년 3월 신설된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권」을 통해 2010년 12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부실관련자 127,197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조회하여 발견한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 1,881억원을 가압류 등 법적조치하고, 621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Ⅶ-8〉 금융거래정보조회 관련 조사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억원)

조사인원	법적조치 현황(가압류 등)	회수금액
부실관련자 127,197	1,881	621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 해외 재산조사

-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해외 재산 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는 미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해외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 2010년 12월말까지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1,516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해외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미화 339만달러를 회수하였으며, 은닉재산이 확인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현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2010년에 들어서는 그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재산조사를 캐나다 · 일본 · 호주 · 홍콩(중국) · 뉴질랜드 · 필리핀으로 확대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강화하여 해외은닉 재산 환수가능성을 확대하였다.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활동

- 공사는 공적자금 등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부실 책임추궁 및 내부정보 입수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2010년 12월말 까지 총 149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4건, 274.5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3.2억원을 지급하였다.



-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금융회사 부실발생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세청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 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상호 연동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신고센터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 해외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LA 및 뉴욕)·캐나다(토론토) 현지 한인회, 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터넷 배너광고 및 미국, 일본, 중국 교민 홍보위원 위촉 등 입체적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 교민의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국·캐나다에 수신자 부담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를 운영 중으로 상시적으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특히 2010년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한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해 부실책임 조사업무, 해외재산조사 업무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한국경제신문 등에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 또한,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주 주요 일간신문(중앙일보, 한국일보)에 각 1회 지면 광고를 실시하고, 신고센터 홍보물의 도안을 개선하여 금융회사별로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5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 1국 1부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견 인력을 포함 하여 총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견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한편, 공사는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부실관련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로부터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통보받아 동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0년에는 부실관련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 76억원을 자진 변제받는 등 조기에 예금보험기금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민·형사상 부실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에 기여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 회계감사 근절 등 투명한 기업회계 정착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 8 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 제1절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공사는 2010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우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와 대만 등 주요 8개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완성하였고, 그 밖의 국가들의 예금보험제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유럽 일부 국가의 예금보험제도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아울러,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개혁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정책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조사연구 자료를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과 예금보험제도」, 「월간 해외예금보험동향」, 「금융안정연구」 등을 통해 발표하여 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책당국 등에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 Annual Report 2010



〈표Ⅷ-1〉 2010년도 주요 조사연구 실적

주 제	제 목
해외 예금보험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예금보험제도
	서남부유럽국가의 예금보험제도
	스페인과 독일 저축은행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강화조치
	EU의 예금보험지침 개정 동향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해외 금융감독체계	미국 금융규제개혁안에 따른 FDIC의 역할 변화 및 시사점
	미국 의회의 금융규제개혁법안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설립 법안
	영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향
	BCBS의 은행자본규제 강화 방안
	금융안정망 참여기구간 협력사례 분석
해외 경제 및 금융 현안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경과 보고
	미국 금융위기책임수수료 부과 방안
	미국 대형금융회사 규제 방안(볼커룰)
	주요국의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 규제 동향
	일본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사례 조사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1.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및 내실화

- 공사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제규범 논의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IADI는 2010년 들어 예금보험 관련 글로벌 표준인 「예금보험핵심준칙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Methodology)」을 제정함으로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동 평가기준 제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 예금보험기구 대표로 구성된 국제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였다. 「예금보험핵심준칙 평가기준」은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국가별 이행 권고사항으로서, 국가별 예금보험제도의 목표, 책무와 권한, 지배구조, 타 금융안전망 참여자와의 관계, 국가간 이슈, 강제가입 및 보호한도, 기금, 대국민 홍보, 법적보호, 부실정리, 보험금 지급, 자산회수 등 총 18개항의 준칙(Principle) 및 준칙별 평가기준(Methodology)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금보험핵심준칙 평가기준」은 2010년 12월말 현재 IADI의 내부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1년 초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12개 주요 국제기준(Compendium of Standards) 및 IMF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리뷰에 추가 편입될 예정이다.

- 공사는 IADI 창립회원국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0월 IADI 연차총회(일본 도쿄)에서는 공사 부사장이 3년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공사는 그간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인정받아 IADI 내 예금보험기구의 「시스템 위기대응」 조사연구 소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 2월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7개국과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계획서 및 설문지를 작성하여 11월에는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공사는 설문결과를 분석한 조사보고서(discussion paper)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제32차 IADI 집행위원회 시 동 소위원회를 주재하여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각 예금보험기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아울러, 공사는 IADI 고위급 훈련과정(2회), IADI 지역위원회(2회) 등 총 7회에 걸쳐 예금보험 관련 훈련과정에 강사를 파견하여 금융구조조정 경험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발표하였다.
- 공사는 개별 예금보험기구와도 교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2010년 중 미국(3월), 베트남(5월)과 정보·인적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11월, 신규)와 MOU를 신규로 체결하는 등 2010년 12월말 현재 총 8개국 9개 예금보험기구와 MOU를 체결 및 운용 중에 있다. 또한, 일본 예금보험공사(DICJ)에는 2주간 공사직원을 파견(5월)하는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들과 상시적인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사는 영문 홍보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영문 소책자를 신규로 개발(10월)하여 공사를 해외에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문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타 예금보험기구 및 국제기구 등에 발송하고 있다.

2. 해외에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전파

- 1996년 설립 직후 공사는 IMF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집행 및 예금보험제도 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히 극복하자 개발도상국 등 해외 신흥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위기 극복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제도운용 경험을 이들 신흥국들에 활발히 전수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내에 「우리나라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단」*(Global-KDIC KSP 추진단)을 구성(12월)하였다.

* 금융정리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부서 중심의 비상설협의체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구조조정 경험 관련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콘텐츠 모듈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공사는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 설계 및 기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 연계하여 몽골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지실태조사, 고위급 인사 내방, 재무부 등 정책담당자 워킹그룹 연수(1주), 이슈별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준비하여, 2011년에는 KSP를 통한 본격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한국형 원조모델로 2010년부터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기획재정부 총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운영).

- 또한, 공사는 기타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개선 지원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무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담당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 체계와 운영현황을 전수(7월)하였고, 베트남 예금보험공사(DIV)에는 IT 시스템 구축 연수(9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ADB의 중국·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자문 사업 컨설턴트에 공사직원이 선발됨에 따라, 공사는 2011년 중 동 기구의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Ⅷ-2〉 2010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전파 실적

국가	대상기관	일자	주요 내용
베트남	예보	5월	현지 실무 워크숍
		9월	간부직원 내방 IT 시스템 구축 조사·연수
몽골	정부	6월	예보제도 도입 정책자문(KSP) 착수
		9월	ADB의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자문」 준비 워크숍 참석
		11월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실무자 훈련
인도네시아	재무부	7월	통합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내방 연수

〈표Ⅷ-3〉 2010년 훈련과정 강사 파견 및 우리나라 모범사례 발표 실적

회의	장소	일자	주요 내용
IADI 아시아 지역위원회	인도 고아	1월	한국 예금보험기금 운영 사례
일본 예보(DICJ) 라운드테이블	일본 도쿄	3월	금융복합화에 따른 금융안전망 가구간 공조
IADI 고위급 훈련과정	미국 워싱턴 DC	4월	한국의 부실은행 정리제도
아·태지역 예금보험기구 대표자 회의	필리핀 세부	4월	통합정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험금 지급 사례
IADI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탄자니아 아루샤	7월	금융위기 극복사례 및 KSP 홍보
IADI 고위급 훈련과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8월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경험
IADI 연차총회	일본 도쿄	10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및 정리



제 9 장

2010년도 결산

● 제1절 결산 개요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및 공사회계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여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에는 대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 제2절 결산 기준

-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 중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Annual Report 2010



(2) 유가증권의 평가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로 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평가

- 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처리하며 그 변동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오류 및 회계변경에 의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손익이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당기손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



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충당부채)을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 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공사운영비의 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사운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보험료수입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



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다.

마. 장기충당부채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바. 사채발행차금

-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사.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충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기금

가. 재무 현황

- 2010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6조 7,74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968억원(11.5%) 증가하였다. 예치금 등 운용자산(5조 5,903억원)이 전년 말 대비 7,137억원 증가하였으며, 대출금 등 지원자산(1,307억원)은 (주)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257억원 감소하였다. 구상채권자산(3조 4,963억원)은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및 출연금 지급 등으로 전년 말 대비 5,220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대손충당금 차감 후 구상채권자산 잔액은 141억원 감소하였다. 계정별 자산총액은 은행계정 4조 7,164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2,930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3조 1,820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6,990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238억원, 상호저축은행계정 7,621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04년 1월 1일 부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자산과 부채를 신탁중앙회로 이관처리하였다.

- 부채총액은 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521억원(99.8%) 감소하였다. 이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2009년말에 적립하였던 지급준비금(6,871억원)을 전액 환입하였고, 신용협동조합계정 관련 차입금(664억원)을 신탁중앙회에 이관한데 기인한다. 계정별 부채총액은 상호저축은행계정이 2조 9,021억원(계정간 차입금 포함), 여타 계정은 부채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 자본총액은 6조 7,73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4,489억원(27.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09년 중 당기순이익 1조 3,834억원 시현과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으로 인한 결손금 감소(564억원)에 따른 기금잉여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다. 계정별 자본총액은 은행계정 4조 7,164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2,922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3조 1,820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6,990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238억원, 상호저축은행계정 (-)2조 1,400억원이다.

나. 손익 현황

- 2010년 중 당기순이익은 1조 3,8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9억원(177.5%)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보험료수입 증가로 사업이익이 318억원 증가하였고, 전일저축은행 보험사고와 관련된 지급준비금이 환입됨에 따라 사업외이익이 8,53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계정별 당기순이익은 은행계정 6,604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353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3,035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792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45억원이다. 상호저축은행계정은 계정간차입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보험료율 인상(2009년 7월)으로 계정간 거래비용은 감소, 보험료 수입은 증가된 반면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3,005억원을 시현하였다.

-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각각 1조 3,990억원 및 613억원으로 1조 3,377억원의 사업이익을 시현하였다. 사업수익은 보험료수입 1조 1,808억원(84.4%) 및 기금관리수익 2,156억원(15.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용은 공사운영비 613억원(99.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한편,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은 각각 7,560억원 및 7,103억원으로 사업외이익 45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이익은 지급준비금 환입액 6,871억원, 대손충당금 순전입액 6,235억원에 주로 기인한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 2010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6조 5,87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902억원(7.0%)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지분증권 매각 등에 따라 유동자산이 1조 8,676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투자자산의 경우 지분증권 평가금액이 1조 4,608억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증권 처분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인하여 전년 말 대비 6,474억원 감소하였다.
- 부채총액은 27조 2,05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105억원(2.5%)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 부채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 순자산총액은 (-)10조 6,18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8,007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7,990억원의 이익 시현 및 우리금융지주 등 보유지분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등 순자산조정이 1조 16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나. 손익현황

- 2010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7,9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익이 234억원(2.8%) 감소하였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즉 기업회계기준 상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기는 2,457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1조 7,284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1조 4,82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 재정운영순원가는 1,881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2,457억원에서 관리운영비 112억원 및 비배분비용 78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766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인건비,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 한편, 재정운영결과 (-)7,990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1,881억원에서 비교환수익 9,871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입 등을 말한다.

3. 공사회계

가. 재무 현황

- 2010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6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5억원(2.5%) 증가하였다. 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현금과예금 등 유동자산이 12억원(12.0%), 비유동자산이 141억원(88.0%)이다. 비유동자산은 보증금 등 투자자산 112억원과 유형자산 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채총액은 1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억원(3.0%) 감소하였다. 이는 제세예수금의 감소 등으로 유동부채(12억원)가 4억원 감소하였고, 자본예산전입금 등 비유동부채(147억원)가 1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유동부채 12억원(7.5%)과 자본예산전입금 등 비유동부채 147억원(92.5%)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본총액은 약 1억원으로 2010년 중 발생한 당기잉여금(0.6억원)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0.6억원 증가하였다.

나. 손익 현황

- 2010년 중 총수익 및 총비용은 각각 728.9억원과 728.3억원으로 0.6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하였다.
- 총수익은 기금전입수익 724억원(99.3%)과 예치금이자 4억원(0.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총비용은 인건비 392억원(53.8%), 경비 300억원(41.2%)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6억원(4.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IX-1〉 요약 대차대조표 (총괄)

당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44,179	37,400	유동부채	15	7,536
1. 운용자산	37,003	30,034	1. 지원부채	-	664
예치금	17,013	10,841	단기차입금	-	664
단기운용채권	19,990	19,193	2. 기타유동부채	15	6,872
2. 지원자산	941	1,362	지급준비금	-	6,871
단기대출금	1,827	2,235	기타	15	1
(대손충당금)	(-886)	(-873)	비유동부채		-
3. 기타유동자산	6,235	6,004	1. 지원부채		-
미수보험료	5,575	5,367	2.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	660	637	부채총계	15	7,536
비유동자산	23,570	23,381	기금잉여금	67,517	53,119
1. 운용자산	18,900	18,732	(순이익:		
장기운용채권	18,900	18,732	당 기: 4,985		
2. 지원자산	366	202	전 기: 9,275)		
장기유가증권	246	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7	126
장기대출금	120	120	1. 채권평가손익	217	126
3. 구상채권자산	4,232	4,373	2. 자본법자본변동	-	-
보험금구상채권	10,763	10,796	자본총계	67,734	53,245
(대손충당금)	(-8,062)	(-7,419)			
출연금구상채권	23,981	18,947			
(대손충당금)	(-22,669)	(-17,951)			
기타구상채권	219	-			
(대손충당금)	-	-			
4. 기타비유동자산	72	74			
자본예산전출금	72	74			
자산총계	67,749	60,781	부채및자본총계	67,749	60,781



〈표IX-2〉 요약 손익계산서 (총괄)

당기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전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예금보험기금회계)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613	634	사업수익	13,990	13,693
1. 공사운영비	613	588	1. 기금수익	11,824	11,337
2. 기금관리비용	-	46	보험료수입	11,808	11,271
출연비용	-	-	출연금수입	16	66
차입금이자	-	35	2. 기금관리수익	2,156	2,332
기금직접비용	-	11	예치금이자	516	575
			유가증권이자	1,557	1,672
			대출금이자	63	83
			유가증권처분이익	20	2
사업이익	13,377	13,059	3. 기타사업수익	10	24
사업외비용	7,103	10,376	사업외수익	7,560	2,302
1. 대손충당금전입액	6,922	3,366	1. 지급준비금환입액	6,871	1,683
2. 지급준비금전입액	-	6,871	2. 파생상품평가이익	-	-
3. 지분법평가손실	181	111	3. 대손충당금환입액	687	28
4. 기타	-	28	4. 자원자산처분이익	-	589
당기순이익	13,834	4,985	5. 기타	2	2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IX-3〉 요약 재정상태표 (총괄)

당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36,126	17,450	유동부채	40,470	77,63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6,384	952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8,435	75,497
2. 단기금융상품	25,449	13,267	2. 기타유동부채	2,035	2,142
3. 단기투자증권	4,096	3,093			
4. 미수채권	11,151	11,093	장기차입부채	231,263	201,160
(대손충당금)	(-)11,027	(-)11,028	1. 공채	228,985	197,657
5. 단기대여금	73	73	2. 장기차입금	2,278	3,503
6. 기타유동자산	-	-			
			장기충당부채	126	201
투자자산	128,263	134,737	1. 기타장기충당부채	126	201
1. 장기대여금	157,567	167,098			
(대손충당금)	(-)132,154	(-)135,557	기타비유동부채	198	162
2. 장기투자증권	102,850	103,196	1. 기타비유동부채	198	162
3. 기타투자자산	-	-			
			부채총계	272,057	279,162
기타비유동자산	1,486	2,786			
1. 장기미수채권	112	134	순자산		
(대손충당금)	(-)109	(-)129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기타의비유동자산	1,483	2,781	2. 적립금및잉여금	(-)670,151	(-)678,142
			3. 순자산조정	40,905	30,889
			순자산계	(-)106,182	(-)124,189
자산총계	165,875	154,973	부채및순자산총계	165,875	154,973



〈표IX-4〉 요약 재정운영표 (총괄)

당기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전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7,284	14,827	2,457	18,686	17,973	713
1. 금융정책지원	17,284	14,827	2,457	18,686	17,973	713
보험비용	120	-	-	38	-	-
인건비	14	-	-	21	-	-
경비	7	-	-	10	-	-
지급수수료	101	-	-	69	-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2,148	-	-	2,490	-	-
대손상각비	551	-	-	652	-	-
공채이자비용	14,117	-	-	14,728	-	-
차입금이자비용	226	-	-	273	-	-
투자증권감액손실	-	-	-	405	-	-
기타이자수익	-	6	6	-	25	25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8,871	8,871	-	6,566	6,566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21	21	-	-	-
충당부채환입	-	83	83	-	407	407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	427	427	-	1,428	1,428
잡이익	-	84	84	-	312	312
대손충당금환입	-	4,455	4,455	-	9,046	9,046
배당금수익	-	872	872	-	181	181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	8	8	-	8	8
II. 관리운영비			112			128
1. 인건비			73			86
2. 경비			39			42
III. 비배분비용			78			468
1. 지급수수료			1			1
2. 평가손실			65			346
3. 기타비용			12			121
IV. 비배분수익			766			877
1. 이자수익			637			372
2. 평가이익			65			346
3. 기타수익			64			15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881			432
VI. 비교환수익			9,871			8,656
1. 부담금수익			9,871			8,656
VII. 재정운영결과(V-VI)			(-)7,990			(-)8,224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표IX-5〉 요약 대차대조표

당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1,912	1,828	유동부채	1,189	1,585
1. 현금과예금	1,189	1,464	1. 미지급금	-	2
2. 미 수 금	-	134	2. 미지급비용	438	456
3. 선 급 금	670	182	3. 예 수 금	751	1,127
4. 미수수익	8	5			
5. 선급비용	45	43			
비유동자산	14,077	14,607	비유동부채	14,670	14,777
1. 투자자산	11,155	11,456	1. 자본예산잔입금	14,670	14,777
보증금	9,441	9,852	2. 퇴직급여충당금	10,041	7,567
장기유가증권	-	-	(국민연금전환금)	(-)3	(-)3
기타투자자산	1,714	1,604	(퇴직보험예치금)	(-)10,038	(-)7,564
2. 유형자산	2,922	3,151	부채총계	15,859	16,362
임차부동산시설물	460	552	1. 이익잉여금	130	73
차량운반구	-	-	(당기잉여금 또는 결손금)		
기타유형자산	15,146	15,404	당 기: 34		
(감가상각누계액)	(-)12,684	(-)12,805	전 기: (-)475		
자산총계	15,989	16,435	자본총계	130	73
			부채및자본총계	15,989	16,435



〈표IX-6〉 요약 손익계산서

당기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전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1. 인건비	39,247	41,641	1. 기금전입수익	72,388	73,301
2. 경 비	29,982	30,319	2. 예치금이자	427	961
3. 총당금전입액	3,608	2,224	3. 유가증권이자	-	-
4. 기타비용	-	239	4. 기타수익	79	195
5. 법인세비용	-	-			
비용총계	72,837	74,423			
당기잉여금	57	34	수익총계	72,894	74,457

Annual Report 2010

부 록

1. 조직 운영
2. 2010년도 주요일지
3. 통 계

1. 조직 운영

가. 예금보험위원회

●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 예금보험위원회는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정관 변경, 기금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보험금 및 가자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기금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등 공사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

(2010년 12월말 현재)

직	책	성	명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이 승 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혁 세	
기획재정부 차관		임 종 룡	
한국은행 부총재		이 주 열	
위촉 위원		윤 창 현	
위촉 위원		안 세 일	
위촉 위원		김 경 호	

|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의 정관 변경 • 공사의 예산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보험료 납부의 감액 내지 유예 • 보험금의 지급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송부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회사의 판정 • 부실우려금융회사의 판정 • 기금계정간의 거래 • 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과 관련한 필요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유가증권의 지정 매입 – 부보금융회사에의 예치 지정
보 고 사 항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 2010년도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

일 자	처 리 안 건
1. 11	•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자금금 지급 및 계정간 거래안
1. 20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확정 보고 •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보고 •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간거래 내역 보고
2. 10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09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주)대구은행 공동검사 결과 보고
2. 22	• 상호저축은행 공동검사 참여요청안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24	•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2009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공사 회계의 결산안 • 2009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 (경북)대아, (광주)무등, (서울)중앙부산, (서울)프라임 및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결과
3. 10	• 2010년도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3. 2	• 예나래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계정간 거래안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우리금융지주 및 3개 은행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2010년도 경영정상화계획 수정안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4. 22	•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2009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일부개정 합의서안
5. 26	• 그린손해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 (서울)서울, (부산)파랑새, (인천)신라, (광주)창업, (경기)토마토 및 (부산)부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일 자	처 리 안 건
6. 25	• 2011년도(제9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7. 28	•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2010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서울)한신 및 (서울)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9. 1	• 여유자금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9. 15	• 2010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반기결산 보고 • (주)제주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 (경기)한국투자, (경기)삼신 및 (대구)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10. 27	• 2010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11. 10	• (서울)제일2, (충남)한주, (경기)안국 및 (대구)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12. 21	• 2011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 확정 보고

나. 이사회

-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4인 및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규정 제·개정,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 임 원 현 황 |

(2010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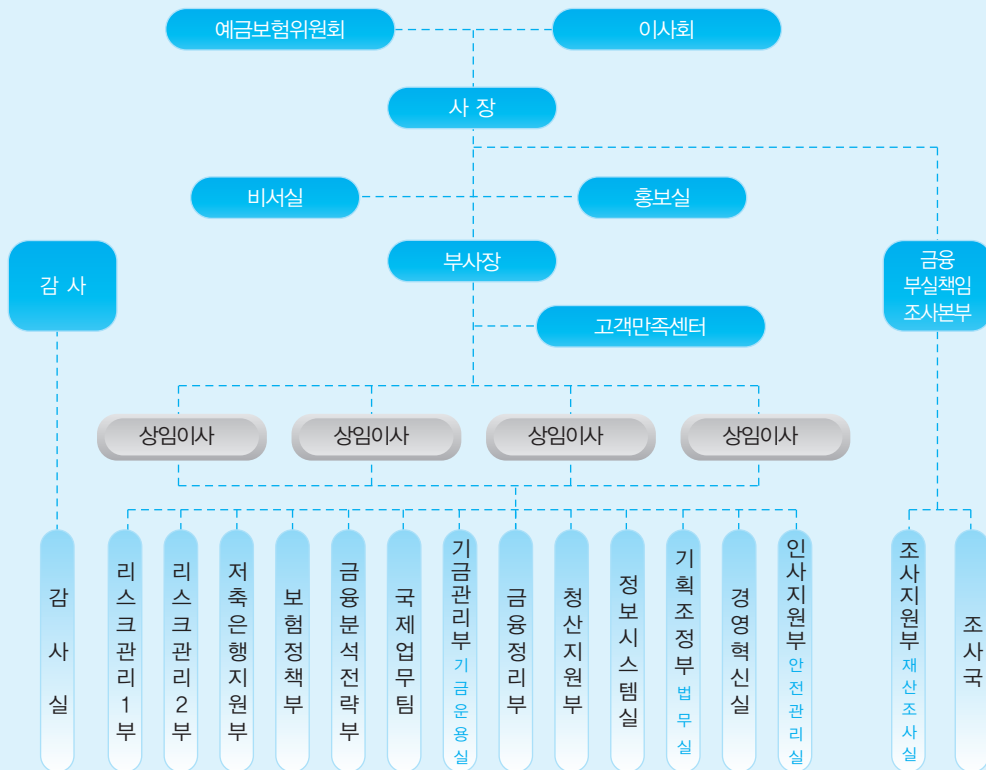
직	책	성	명
사	장	이	승 우
부	사 장	이	원 태
상	임 이 사	신	동 진
상	임 이 사	김	원
상	임 이 사	김	정 태
상	임 이 사	진	상 근
비상임	이사	강	대 석
비상임	이사	이	덕 로
비상임	이사	이	재 국
비상임	이사	정	규 영
비상임	이사	최	정 상
비상임	이사	이	영 식
비상임	이사	정	찬 우
감	사	손	교 명

다. 조 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말 현재 리스크관리1부, 리스크관리2부, 저축은행지원부, 보험정책부, 금융분석전략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부, 청산지원부, 정보시스템실, 기획조정부, 경영혁신실, 인사지원부, 홍보실, 비서실, 감사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0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 조직도 |

(2010년 12월말 현재)



* 고객만족센터 및 국제업무팀은 팀급

| 인원 현황 |

(2010년 12월말 현재 인원,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계
인원	14 ¹⁾	399	162	561

주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비상임이사 포함(7인)

주 2) 별정직원은 변호사, 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및 감사인력 등 특정직을 포함

2. 2010년도 주요 일지

일 자	처 리 안 건
3월 12일	대한생명 상장공모(IPO)시 구주매출(2.23%)을 통해 1,586억원 회수
3월 16일	하이닉스 채권단 공동매각(매각제한 주식)으로 1,088억원
3월 18일	금융위, 예쓰저축은행 설립 승인
3월 25일	전북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출자(40억원)
4월 1일	금융위,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쓰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로의 계약이전결정
4월 1일	전북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출연(799억원)
4월 13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9% 매각으로 11,606억원 회수
5월 7일	삼성생명 상장공모(IPO)시 구주매출(6.64%)을 통해 1,626억원 회수
6월 18일	하이닉스 블록세일(매각제한 해제주식)로 1,242억원 회수
7월 16일	서울보증보험 FY2009 당기순이익(3,367억원)의 75%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2,525억원 회수
7월 27일	하이닉스 채권단 공동매각(매각제한 주식)으로 693억원 회수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전북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8월 11일	금융위, 으뜸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8월 19일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금 1,685억원 회수
9월 20일	대우인터내셔널 채권단 공동매각으로 매각대금 673억원 회수
11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출자(100억원)
11월 18일	금융위,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쓰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로의 계약이전결정
11월 18일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출연(2,490억원)
12월 31일	금융위,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10월 4일~ 12월 31일	제주은행 보통주 장종매각으로 28억원 회수

3. 통 계

(1) 부보금융회사¹⁾

(단위 : 개)

금 융 권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은 행	55	56	53	53	55	54	54
(국 내)	(18)	(18)	(17)	(17)	(17)	(17)	(17)
(외국계)	(37)	(38)	(36)	(36)	(38)	(37)	(37)
(기 타) ²⁾	-	-	-	-	-	-	-
금융투자사 ³⁾	56	53	53	53	60	115	118
보험사	43	42	43	44	43	44	44
(생명보험)	(23)	(22)	(22)	(22)	(22)	(22)	(23)
(손해보험)	(20)	(20)	(21)	(22)	(21)	(22)	(21)
종합금융회사	2	2	2	2	2	2	1
상호저축은행	113	111	110	109	106	106	105
신용협동조합 ⁴⁾	-	-	-	-	-	-	-
합 계	269	264	261	261	266	321	322

주 1) 부보금융회사수는 영업개시일에서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 기준일

주 2) 신용사업 영위 단위수협으로서 2003년 1월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됨

주 3) 2009.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09. 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주 4)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됨

(2) 금융권별 부보예금¹⁾

(말잔기준, 단위 : 십억원, %)

금 융 권	2009년말(B)	2010년말(B)	증감(B-A)(증감률)
은 행	632,776	738,224	105,448 (16.7)
금융투자사	18,786	22,207	3,421 (18.2)
보험사	293,571	322,521	28,950 (9.9)
(생명보험)	(248,105)	(268,954)	20,849 (8.4)
(손해보험)	(45,466)	(53,567)	8,101 (17.8)
종합금융회사	2,057	1,226	△831 (40.4)
상호저축은행	72,929	76,602	3,673 (5.0)
합 계	1,020,119	1,160,779	40,660 (13.8)

주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정부·지방자치단체·타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

(3) 상환기금 수입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1998년 ¹⁾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4,775	4,956	4,871	4,987	5,027	4,976	5,965	6,811	42,368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	168	145	151	156	185	169	213	1,343	
보 험 사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074	1,176	1,288	1,402	1,543	1,683	1,782	1,943	11,891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889)	(978)	(1,069)	(1,160)	(1,265)	(1,364)	(1,430)	(1,534)	9,690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185)	(198)	(219)	(242)	(278)	(319)	(352)	(409)	2,201	
종합금융회사	980	336	233	139	130	1,818	20	6	5	6	7	8	10	19	81	
상호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222	264	319	370	430	491	593	715	3,404	
신용협동조합	402	162	281	407	641	1,893	-	-	-	216	116	129	137	170	767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6,247	6,570	6,628	7,133	7,280	7,472	8,656	9,871	59,857	

주 1) 1998년 보험료 수입은 1998년초 기금통합 체제 정비 후 해체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것을 포함

주 2)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4) 예금보험료 수입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0,168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372
보 험 사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2,041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6,177)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5,864)
종합금융회사	73	17	15	19	22	24	29	34	233
상호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10,600
합 계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85,414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5)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사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회사	65,120	-	12,600	73,344	-	151,064
상호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용협동조합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주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6)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093	-	81,064	-	442,196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사	159,198	31,191	-	3,495	-	193,884
(생명보험)	(56,697)	(27,518)	-	(3,495)	-	(87,709)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회사	26,931	7,431	182,718	-	-	217,080
상호저축은행	1	4,157	72,892	-	5,969	83,019
신용협동조합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016	303,124	105,799	5,969	1,108,844

(7)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하나로종금	24,912
	한스, 한국, 중앙종금	2
	영남종금	1,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5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433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57
	대한화재	509
	우리(舊하나로)종금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5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구 분		지원금액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소 계	186,016	
보험금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직접지급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증권	1
	정리금융기관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직접매입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 등)	8,570
		국민은행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정리금융공사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대출을 통한 매입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105,799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969
	소 계	5,969	
	총 계	1,108,844	

(8)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사	-	-	-	-	-	-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상호저축은행	1,211	24,542	14,415	4,891	219	45,278
합 계	1,211	24,542	14,415	4,891	219	45,278

(9) 상환기금 지원자금 연도별 회수 실적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누 계 ¹⁾	475,147

주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포함

(10) 상환기금 지원자금 형태별 회수 실적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²⁾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58,129	695	18,181	57,696	-	234,702
금융투자	12,121	3,230	75	17,026	-	32,452
보 험	30,250	884	4,266	2,325	-	37,725
종 금	1,349	59	79,504	-	-	80,913
저축은행	-	340	48,998	-	5,969	55,306
신 험	-	4	34,045	-	-	34,049
합 계	201,850	5,213	185,069	77,047	5,969	475,147

주 1)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주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11)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말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재기관수
	총기관수(A)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영업이전등	계(B)	비중(B/A)		
은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9	165	216	569	950	45.6	159	1,281
•종금	30	22	8	—	30	100.0	1	1
•증권	36	6	8	2	16	44.4	30	50
•보험	50	10	7	6	23	46.0	25	52
•자산운용	31	6	8	—	14	45.2	58	75
•저축은행	231	116	28	1	145	62.8	19	105
•신협	1,666	2	144	560	706	42.4	14	973
•리스	25	3	13	—	16	64.0	16	25
합계	2,102	170	227	569	966	46.0	160	1,299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10. 8월

(12)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0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행	34.0	13.9	—	14.4	24.6	86.9
제2금융권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험	15.9	3.1	—	0.3	1.8	21.2
•신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자료 :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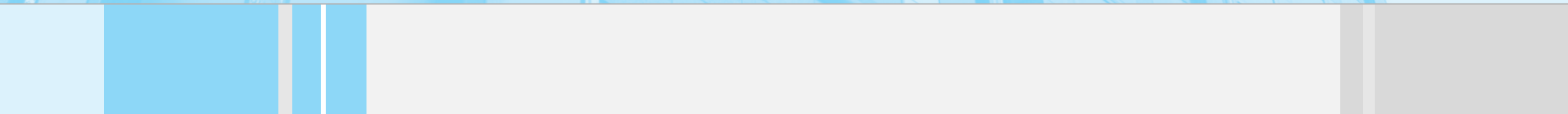


K O R E A

D E P O S I T

I N S U R A N C E

C O R P O R A T I O N



예금보험공사 **2010** 연차보고서

발 행 인 | 이승우

편 집 인 | 장건식

발 행 처 | 예금보험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 | 02)758-0114

팩 스 | 02)758-0220

